

캐나다 보훈제도

조영훈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목차

I. 일반현황

1. 국가

- 1) 인구와 국토
- 2) 정치와 경제
- 3) 사회지출과 정부재정

2. 국방

- 1) 캐나다군의 역사와 현황
- 2) 캐나다군의 조직 및 근무조건

3. 사회보장제도

- 1) 연금
 - (1) 노령보장연금과 공공부조급여
 - (2) 캐나다 국민연금
 - (3) 민영연금
- 2) 의료보장제도
 - (1) 의료보장제도의 운영기관과 원칙
 - (2) 급여대상 의료항목
 - (3) 재원

II. 군인연금

1. 개요

- 1) 역사
- 2) 특징

2. 기여금

3. 급여

- 1) 퇴직수당
- 2) 퇴직연금
- 3) 퇴직일시금
- 4) 유족급여

4. 가입자와 수급자

- 1) 현황
- 2) 수급자의 급여액수별 분포
- 3) 수급자의 연령별 분포

5. 재정

6. 기타 급여들

- 1) 보충사망급여
- 2) 소득보상금
- 3) 예비군 퇴직보상금

<부록>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액 조정

Ⅲ. 보훈제도 개관

1. 보훈제도 연혁

- 1) 제 1단계
- 2) 제 2단계

2. 제대군인부 조직

- 1) 현황
- 2) 조직

3. 보훈제도의 대상자

- 1) 수급자격
- 2) 수급자 현황과 추이

4. 보훈예산

5. 보훈관련 정부기관들

6. 제대군인부 관할 법안들

IV. 보훈프로그램

1. 재활프로그램

2. 재정지원프로그램

- 1) 소득상실급여
- 2) 영구장애수당
- 3) 보충퇴직급여
- 4) 캐나다군 소득보조급여

3. 상이보상금

4. 기타 보상금

- 1) 사망급여
- 2) 피복수당

- 3) 억류급여
- 4) 화학전 실험참가자 보상금

5. 의료서비스

- 1) 의료급여
 - (1) 일상생활지원
 - (2) 앰블런스 및 이동서비스
 - (3) 청력보조서비스
 - (4) 치과서비스
 - (5) 병원서비스
 - (6) 재택의료서비스
 - (7) 의료보조기구
 - (8) 간호서비스
 - (9) 산소 요법
 - (10) 처방약품
 - (11) 보철 및 교정
 - (12) 관련 건강서비스
 - (13) 특수장비
 - (14) 시력보호
- 2) 제대군인 자립프로그램
- 3) 요양시설입소
- 4) 단체의료보험
- 5) 기타 의료지원
- 6) 세인트 앤 병원

6. 구직지원프로그램

7. 가족지원프로그램

- 1) 생활지원프로그램

2) 장례관련프로그램

8. 상이연금

1) 개요

2) 급여

3) 상이연금과 군인연금/국민연금의 급여액 조정

9. 제대사유별 보훈급여 및 기타 급여 수준

1) 상이제대군인

2) 사망제대군인

3) 비상이 제대군인

V. 이의신청과 보훈기념사업

1. 등록과 이의신청

1) 등록신청

2) 상이등급 심사

(1) 상이등급표

(2) 삶의 질 등급

(3) 연금급여율과 급여액

3) 이의신청

(1) 이의신청 담당기관

(2) 이의신청 과정

(3) 이의신청 현황

2. 보훈기념사업

1) 제대군인의 해

2) 학습 및 교육매체의 개발과 보급

3) 기념물의 관리와 보존

4) 제대군인 기념 웹사이트 운영

참고문헌

I. 일반현황

1. 국가

1) 인구와 국토

캐나다의 국토는 9,984,670km²(내수면을 빼면 9,093,507km²)로서 북아메리카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다. 본토의 길이는 동서로 5,514km이고 남북으로 4,634km이다. 이렇게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캐나다 국토의 상당부분은 북극권에 가까워 주거하기가 힘들다. 대부분의 인구는 미국과의 국경인 북위 49도 근방에 밀집해 있으며,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와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캘거리 등의 대도시도 국경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광대한 국토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함께 목재,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금과 각종 광물 등의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인구는 대략 3,300만 명이고, 인구밀도는 1km²당 3.3으로 매우 낮다. 캐나다는 이민자의 나라답게 인구의 33.6%는 영국계, 15.9%는 프랑스계, 29.5%는 서구의 다른 인종들(이태리, 독일, 우크라이나, 그리스 등), 9.9%는 아시아계(주로 중국과 인도), 4.4%는 캐나다 원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의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며, 인구의 59%가 영어를, 그리고 23%가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퀘벡주에서는 프랑스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프랑스어만 사용하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기도 하다.

캐나다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인구의 12.8%이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율은 이미 15%를 넘은 다른 선진산업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노인인구와 14세 이하 아동인구를 합친 피부양인구를 15세~64세의 노동력인구(1,710만명)로 나눈 부양률도 약 45%로서 이미 50%를 넘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합산출산율은 1.50정도로 낮으며, 인구증가율은 연 1.1% 정도이다. 낮은 출산율과 인구증가율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정부는 비교적 적극적인 이민자 유치정책을 유지해왔다. 2000년대 들어 매년 25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캐나다에 정착하고 있다.

2) 정치와 경제

캐나다의 정치제도는 의회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군주제에 기초하고 있다. 모국 영국과의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영국국왕이 형식상의 국가원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영국국왕이 자신의 대리인으로 임명하는 총독은 단지 의전상의 대표자격만을 갖는다. 실질적으로 캐나다는 하원의 다수당 당수인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책임제이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10개(북방의 인구희소지역인 3개의 준주를 포함하면 13개)의 주정부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분야에서 매우 강력한 자율성을 가지며, 연방정부는 외교와 국방 분야를 전담한다. 현재 연방정부는 2006년 1월의 총선거에서 승리한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수상의 보수당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캐나다는 UN의 창설회원이고, 대영제국의 자치식민지로서의 오랜 역사 때문에 영연방(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의 일원이며, 프랑스어를 상용하는 다수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 국제기구(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에 가입해 있다. 또한, 캐나다는 선진7개국회의(G-7)와 국제무역기구

(WTO)의 일원이며, 미국 및 멕시코와 함께 북미자유무역기구(NAFTA)를 구성하고 있기도 하다.

2004년 캐나다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달러 기준으로 1조 달러를 약간 넘어 미국의 8.6%, 일본의 26.4%, 독일의 42.5% 수준이며, 한국 및 스페인과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일인당 국민소득은 30,738달러로서 미국(39,653달러)이나 영국(32,124달러)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일본(28,496달러, 2003년)이나 독일(28,609달러) 및 프랑스(29,711달러)에 비해서는 약간 높았다.

2000년대 들어 캐나다의 경제는 매우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04년 현재 노동력인구 가운데 72.6%가 취업하여 미국의 취업률에 비해 1.4% 높고, OECD의 평균치에 비해서는 7.5%나 높았다. 특히, 여성의 취업률은 68.4%로서 미국에 비해 3%, 그리고 OECD 평균에 비해서는 13% 가량 높았다. 캐나다의 실업률은 2005년 6.8%로서 미국에 비해 1.7% 높고, OECD 평균치와 거의 비슷했으며, EU 15개국 평균치에 비해 1% 정도 낮았다. 캐나다의 실업률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와 최근의 천연자원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캐나다 달러(루니)는 2006년 6월 현재 미국 달러 대비 0.9를 상회할 정도로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2002년의 0.64에 비해 30% 이상 높아진 것이다.

3) 사회지출과 정부재정

캐나다는 선진산업국가들 가운데서 조세수준과 공공지출수준이 모두 낮은 가운데 정부재정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3년 캐나다의 조세수입은 GDP 대비 33.8%이다. 이 수치는 미국(25.6%)이나 일본 및 한국(모두 25.3%)에 비해서는 높지만, 서구국가들의

것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다. EU 15개국의 평균치는 40.5%이었고, OECD 평균치는 36.3%였다. 2001년 캐나다의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 GDP 대비 17.81%로서 미국(14.73%)이나 일본 및 한국(16.89% 및 6.12%)에 비해서는 높지만, EU 15개국 평균치(23.86%)나 OECD 평균치(20.77%)에 비해서는 낮았다.

캐나다 정부의 2005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1.3% 흑자로서 1995년의 5.3% 적자에서 크게 향상되었다.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G-7 국가들의 정부재정수지가 적자였던 것을 감안하면 캐나다의 정부재정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재정흑자에 기초하여 보수당정부는 2006년 7월 1일부로 연방정부의 소비세를 7%에서 6%로 낮추었다. 다만 주정부의 재정 상태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며, 최근 들어 급등한 유가에 힘입어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는 앨버타주의 재정상태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국방

1) 캐나다군의 역사와 현황

캐나다의 국방부문을 담당하는 연방정부의 주무부서는 국방부(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DND)이며, 육·해·공군으로 구성된 캐나다군은 Canadian Forces 혹은 줄여서 CF라고 불린다. 캐나다군의 시작은 캐나다가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국을 대신하여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17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적 의미의 캐나다 군대는 1867년 캐나다 연방의 탄생과 함께 만들어졌다.

그 이후로도 캐나다가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캐

캐나다군은 독자적으로가 아니라 대영제국의 일원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였다. 이 전쟁에 캐나다군은 약 62만 명이 참가하여 그 가운데 67,000명이 사망하였고, 17,300명이 부상을 입었다. 1931년의 국가독립 이후에도 캐나다군은 영연방의 일원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였다. 약 150만 명이 참가하여 45,000명이 사망하였고, 55,000명이 부상을 입었다. 두 번의 세계전쟁을 치루면서 캐나다군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미국, 구 소련, 영국에 이어 세계 4위의 군사대국이 되었다.

1950년의 한국전쟁에도 캐나다는 영연방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1951년에야 군대를 파견하였기 때문에 캐나다군의 피해는 크지 않았다. 25,000명의 파견군인 가운데 516명이 사망했고, 천 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캐나다는 UN 등 국제기구나 다수의 국가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국제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캐나다는 미국이 주도한 베트남 전쟁이나 2003년의 제 2차 이라크 전쟁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캐나다가 군대를 파견한 마지막 국제분쟁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서 현재 캐나다군 해외주둔병력 3,300명 가운데 85%인 2,700명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다.

캐나다군의 일 년 예산은 2005년에 미국달러 기준으로 약 106억 달러였다. 이 수치는 캐나다의 GDP 대비 1% 정도로서 1956년의 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의 절대액수의 측면에서 캐나다는 164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에 이어 세계 12위로 떨어졌고, GDP에 대한 국방예산의 측면에서는 세계 20위권 바깥에 머물게 되었다.

2) 캐나다군의 조직 및 근무조건

캐나다군은 육군 19,500명, 해군 9,500명, 공군 14,500명, 행정 및 지원요원 약 20,000명 등 총 62,000명의 정규군(Regular Force)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육군에 16,000명, 공군에 2,600명, 해군에 3,800명 등 총 22,000명의 예비군(Reserve Force)도 보유하고 있다. 예비군은 파트타임으로 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써 보통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학생들로 구성되며, 연간 37일 이상, 하루 6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정규군을 보좌하거나 정규군이 하지 않는 일들(예를 들어, 대규모 재해발생 시 구난활동 전개 등)을 수행한다.

2005년 현재 캐나다군 전체에서 장군 이상은 72명이다. 영관급은 모두 4,600명으로 정규군의 7.5%이며, 위관급은 9,500명으로 15.5%이다. 하사관(Sergeant)에서 준위(Chief Petty Officer)는 정규군의 20.9%인 12,900명이고, 이등병(Private)에서 상등병(Corporal)은 56%인 34,600명이다. 전체적으로 캐나다 정규군은 장교이상 23%, 준위이하의 사병 77%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정규군의 3.5%인 2,100여명이 50세 이상의 장기복무자이다.

캐나다군은 모병제에 기초하여 지원자를 충원하며, 보다 질 높은 인력을 다수 충원하기 위해 민간부문에 견줄만한 근무조건을 제공한다. 급여수준을 보면, 경력과 임무에 따라서 월 기본급은 캐나다달러 기준(2006년 6월 현재 한화 대비 1: 850)으로 다음과 같다. 이등병 2,421~3,556달러, 상등병 4,069~5,190달러, 하사에서 준위 4,675~6,647달러, 소위에서 대위 3,806~6,951달러, 소령에서 대령 7,110~10,392달러, 준장에서 대장 10,992~17,017달러.

비행기조종사와 군의관, 법무관은 같은 계급과 경력이라도 더 많은 급여를 받으며, 모든 군인들은 기본급 이외에 가족수당 등 개인별로 월 수 백 달러를 넘는 다양한 형태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유급휴가는 주말(토요일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경력에 따라서 연간 20~30일이 보장된다. 예비군은 경력과 계급에 따라서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하루 약 75~130달러를

지급받으며, 연간 며칠 가량의 유급휴가가 제공된다.

캐나다군의 정년은 2004년 7월 1일부터 55세에서 60세로 변경되었다. 이 시기 이후 입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60세가 정년이고, 그 이전에 입대한 사람은 54세가 되었을 때 55세와 60세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정년을 몇 살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서술하는 바대로 정년연령에 따라 군인연금의 지급개시시기와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캐나다군이 정년연령을 높인 것은 1981년에 20세였던 입대지원자의 평균연령이 2004년 4월에는 24.5세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입대평균연령이 높아진 결과, 군에 필요한 장기경력 병력이 줄어들고, 일부 군인의 경우 군인연금의 완전연금(35년 이상을 복무했을 때 연금급여액의 최대치 지급)을 받을 자격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연금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는 재정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었다. 정년 연장은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채택된 것이다.

3. 사회보장제도

캐나다는 선진복지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의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실업보험과 가족수당이 1940년과 1944년에 도입되었고, 보편적인 성격의 노령연금이 1951년에 설치되었다. 또한, 소득비례연금과 의료서비스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이 기간 동안 잇달아 도입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보장프로그램들 가운데서 여기서는 보훈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금제도와 의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를 소개하겠다. 이 두 프로

그럼은 캐나다의 사회보장지출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 연금

캐나다의 연금은 이른바 3층 구조(three tiers) 연금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제일 먼저 노령보장연금은 65세 이상의 모든 캐나다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보편급여로서 그 재원은 일반조세이다. 다음에, 캐나다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으로서 가입자와 고용주가 제공하는 기여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적연금이다. 마지막으로, 가입자와 고용주가 기여금을 분담하고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기업연금 등의 민영연금이 있다.

(1) 노령보장연금과 공공부조급여

노령보장연금(Old Age Security: 앞으로 OAS로 표기)은 모든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지니며,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65세의 캐나다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캐나다시민은 2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을 때에만 OAS의 수급자격을 가진다. OAS는 캐나다에 40년 이상 거주했을 때 완전연금(연금급여액의 최대치)을 지급하며, 40년에서 모자라는 햇수만큼 연금급여액이 삭감된다. 예를 들어서, 18세 이후 30년 동안만 캐나다에 거주하였을 경우 OAS의 연금급여액은 완전연금의 75%가 되는 것이다.

OAS 급여액을 포함한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OAS 급여액이 삭감된다. OAS 수급자 가운데 5% 정도가 이 규정으로 인해 OAS 급여 삭감을 받았으며,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 2%는 OAS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다. 이와 같이 소득기준이 설정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수급자격을 준다는 점에서 OAS는 모든 시민들에게 권리로서 주어지는 보편급여인 것이다.

OAS의 수급자 가운데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부조로서의 소득보충급여(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앞으로 GIS로 표기)가 추가로 주어진다. GIS의 수급자격은 OAS의 수급자이면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이다. 저소득 노인가구의 생활지원을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GIS는 주정부가 저소득 노인층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부조급여들(소득지원금, 난방보조금, 처방약지원금, 재택간병지원프로그램 등)의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기본조건이 되기도 한다.

또한, OAS와 GIS를 수급하는 노인의 배우자(동성동거자를 포함하여 12개월 이상 동거한 사실상의 배우자 포함)가 60-64세인 경우에는 공공부조로서의 생활수당(Allowance)이 제공된다. 수급조건은 18세 이후 캐나다에 10년 이상 거주한 캐나다시민 혹은 영주권자이다. 배우자가 사망한 60-64세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유족수당(Allowance for the Survivor)이 제공된다. 유족수당의 수급조건은 생활수당과 같다.

<표 1> 노령보장연금과 공공부조의 일인당 월급여액 (2006년 4월 현재)

급여의 종류	수급자 구분	평균급여액	최대급여액	소득기준(연)
OAS	-	460.83	484.63	62,144/100,914
GIS	독신	409.94	593.97	14,256
	연금수급자의 배우자	253.15	389.67	18,720
	연금비수급자의 배우자	405.10	593.97	34,368
	수당수급자의 배우자	324.94	389.67	34,368

생활수당	-	342.72	874.30	26,496
유족수당	-	546.76	967.24	19,368

<표 1>에는 OAS와 기타 공공부조의 일인당 월급여액이 캐나다달러를 기준으로(2006년 6월 현재 한화 대비 850: 1) 제시되어 있다. OAS의 월 최대 급여액(4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을 때 제공되는 완전연금)은 484.63달러이고, 월평균 급여액은 460.83달러로 커다란 차이가 없다. 대부분의 OAS 수급자들이 완전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완전연금을 수급하는 부부가구는 두 명분의 OAS를 받아 매월 969.26달러의 소득을 얻게 된다. OAS 수급자 가구의 총소득이 연 62,144달러이면 OAS 급여액이 부분적으로 삭감되기 시작하며, 100,914달러가 되면 전액 삭감된다.

GIS의 급여액은 수급자의 혼인상의 지위와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독신인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14,256달러 이하라면 최대 월 593.97달러를 받을 수 있다. 만일 OAS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독신노인이라면 OAS 급여 484.63달러와 GIS 급여 593.97달러의 합계인 1078.60달러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부가 OAS 수급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연 18,72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OAS 급여액에 더하여 최대 779.34달러(389.67달러 X 2명)를 GIS 급여액으로 수급할 수 있다. OAS와 GIS에서 모두 최대급여액을 받는다면 이 부부는 월 1,748.60달러(969.26달러 + 779.34달러) 혹은 연 20,983,20달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다.

배우자가 OAS와 생활수당 등을 받지 않는(즉, 60세 미만이어서 노동능력을 지닌) OAS 수급자는 GIS 급여로 최대 593.97달러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생활수당을 받는 OAS 수급자는 최대

874.3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 두 경우에 있어서 소득기준은 모두 연 34,468달러이다. 생활수당의 최대급여액은 874.30달러이지만 실제의 평균급여액은 월 342.72 달러이다. 유족수당은 비교적 소득기준이 낮은 반면에 최대급여액은 967.24 달러로 가장 크다. 월 평균급여액도 546.76 달러로 공공부조급여 가운데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OAS와 GIS 및 수당들은 1월부터 매 3개월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된다. OAS는 과세대상인 반면에, 다른 공공부조급여들은 비과세소득이다. 2001년 6월 현재 OAS의 수급자는 약 385만 명이며, 급여액은 모두 195억 달러였다. GIS와 수당들의 수급자는 약 85만3천명이며, 급여액은 각각 52억4천만 달러 및 4억1천 달러였다.

(2) 캐나다 국민연금

캐나다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 앞으로 CPP로 표기)은 1966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18세 이상의 모든 캐나다 시민들에게 강제 적용된다. 위에서 서술한 대로 OAS가 보편급여로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반면에, CPP는 급여액이 기여금(연금보험료)을 납부한 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일종의 소득비례연금이다. CPP의 재정은 순순하게 가입자와 고용주가 납부하는 기여금으로만 충당된다.

CPP는 소득비례연금이기는 하지만, 기여금 대상소득의 최저액과 최고액이 설정되어 있다. 즉, 연소득이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CPP의 가입대상이 될 수 없고, 최고소득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최고소득은 연금대상 최고소득(Yearly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YMPE)이라고 불린다. YMPE는 원래는 그것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캐나다의

평균임금이었으며, 그 후 임금상승률에 연동하여 줄곧 높아져왔다. 최저소득은 연기초공제액(Year's Basic Exemption: YBE)이라고도 하며, 원래 YMPE의 10% 수준으로 설정되었다가 1998년에 시행된 연금개혁에서 1996년의 수치인 3,500달러로 고정되었다. 2006년 현재 최저소득은 연 3,500달러이고, 최고소득은 연 42,100달러이다.

CPP의 기여금은 YMPE 한도 내 소득에서 최저소득을 뺀 수치, 즉 기여대상 최대소득(Yearly Maximum Contributory Earnings: YMCE)의 9.90%이며, 피용자의 기여금은 가입자와 고용주가 4.95%씩 부담하고 자영업자의 것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2006년의 경우 기여대상 최대소득이 38,600달러(43,100달러에서 3,500달러를 뺀 수치)이기 때문에 기여금 최대액은 그 수치에 0.099를 곱한 3,821.40달러이다. 연기초공제액과 YMPE 및 기여대상 최대소득은 매년 공지된다.

CPP의 퇴직연금(노령연금)급여는 기여금을 1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의 가입자에게 지급되며, 급여액은 가입자가 낸 기여금에 기초하여 제공된다. 즉, CPP 급여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기여금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CPP 급여액의 최대치는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 동안의 평균 YMPE의 25%이다. 단, 전체 납부 기간 가운데서 소득수준이 특히 나빴던 15%의 기간과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했던 기간은 연금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만일 근로기간 동안의 본인소득이 계속하여 YMPE를 넘었다면, 퇴직연금급여액은 근로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YMPE의 25%가 된다.

퇴직연금의 급여는 65세부터 제공된다. 그렇지만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급여를 최대 5년까지 일찍 혹은 늦게 받을 수도 있다. 조기퇴직연금을 받으려면 60세 이상으로 더 이상 근로하지 않거나 일정 이하의 소득만이 있어야 한다. 연금급여를 일찍 받으면 65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액에서 매월 0.5%씩 삭감된 액수가 지급되고, 연금급여를 늦게 받으면 65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

액에서 매월 0.5%씩 증액된 액수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서, 64세가 된 달부터 연금급여를 받으면 자신이 65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액에서 6%(0.5% X 12개월)가 삭감된 액수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고, 70세가 된 달부터 연금급여를 받으면 자신이 65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액에서 30%(0.5% X 12개월 X 5년)가 증액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CPP에는 퇴직연금 이외에 장애연금과 유족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장애연금은 심각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시민에게 제공된다. 단, 대상자가 연 4,100달러의 근로소득을 얻는 것은 허용된다. 수급자격은 65세 미만으로 장애를 입기 전 6년 동안의 4년 이상 기여금을 납부한 사람이다. 65세 이상인 사람은 장애를 입더라도 CPP의 퇴직연금을 받으며,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장애연금은 퇴직연금으로 전환된다.

CPP 장애연금의 급여액은 정액부분(2005년의 경우 388.67 달러)과 가입자의 소득 및 기여금 납부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된다. 소득비례부분은 가입자가 65세에 받을 퇴직연금급여액의 75% 정도이다. 장애연금급여액은 퇴직연금급여액에 비해 어느 정도 높게 설정되어 있다. 장애연금을 받는 부모의 자녀들은 아동급여를 받으며, 부모 모두가 장애연금을 받을 경우, 혹은 부모 중 한 사람은 장애연금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 일인당 두 사람분의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다.

CPP의 유족급여는 CPP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지급되며, 가입자가 3년 이상 기여금을 납부한 것을 조건으로 한다. 유족급여에는 다음의 세 종류가 있다. 우선, 사망급여(death benefit)는 CPP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가족에게 일시금으로 제공된다. 다음에,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은 가입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아동급여(children's benefit)는 가입자의 18세 미만(풀타임 학생일 경우에는 25세 미만)의 자녀에게 매월 제공된다.

정액으로 제공되는 아동급여 이외의 유족급여액은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어느 정도의 기여금을 얼마 동안 납부했는가에 달려있다. 사망급여는 가입자가 65세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급여액의 6개월분(2,500달러 한도)이다. 유족연금은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65세 이상이고 여타의 CPP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유족연금급여액은 가입자의 퇴직연금급여액의 60%이다. 배우자의 연령이 낮아지면 급여액도 줄어든다.

<표 2> CPP 급여액

구분	퇴직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65세 미만)	유족연금 (65세 이상)	아동급여 (장애/ 유족)	유족연금/ 퇴직연금 합산액 (65세)	유족연금/ 장애연금 합산액	사망급여
월평균 (2005년)	463.95	758.86	341.65	278.13	195.96	651.08	897.76	2,221.65
최고액 (2006년)	844.58	1,031.05	471.85	506.75	200.47	844.58	1,031.05	2,500.00

(단위: 달러)

<표 2>에는 CPP 급여액이 제시되어 있다. CPP의 급여액들은 사망급여를 제외하면 매년 1월 1일에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완전히 반영하여 조정된다. 이 가운데 퇴직연금의 월 최고액은 844.58달러이다. 그렇지만, 월평균액은 463.95달러로서 최고액과의 차이가 크며, 이것은 CPP 퇴직연금의 수급자 가운데서 완전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연금은 최대 월 1,031.05달러 및 월평균 758.86달러로 퇴직연금에 비해 많으며, 최대액과 월평균치 간의 차이가 더 좁다. 유족연금은 퇴직연금과 장

애연금에 비해 작으며, 최대액에서는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506.75달러로 65세 미만의 배우자에 비해 많지만 월평균액에서는 오히려 더 작았다. 그것은 65세 이상 배우자의 상당수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별도로 받기 때문이다.

장애연금의 수급자와 유족연금의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아동급여는 일인당 최대액 200.47달러 및 월평균액 195.96달러로 두 수치들 간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 사망급여 역시 최대치와 평균치 간의 차이가 많지 않았다. 한 가구에서 유족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경우 월 최대치는 844.58달러로서 퇴직연금의 최대치와 같다. 즉, 유족연금과 퇴직연금의 합산액의 최대치는 퇴직연금의 최대치인 것이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최대치는 1031.05달러이며, 이것은 장애연금의 최대치와 일치한다.

2003년 3월 현재 약 1,110만 명이 CPP에 기여금을 납부하였으며, 2002 회계연도(2002년 4월-2003년 3월)의 기여금 총액은 252억 달러였다. 이 기간 동안 CPP의 수급자는 모두 370만 명이었으며, 급여총액은 216억 달러였다. 이 가운데 290만 명이 퇴직연금을 받았고, 퇴직연금급여로 151억 달러(CPP 급여총액의 70%)가 지출되었다. 약 91만 명이 유족연금을 받았고, 86,000명이 아동급여를 받았으며, 유족급여에 모두 35억 달러(사망급여 2억 달러 포함, CPP 급여총액의 16%)가 지출되었다. 장애연금은 28만3천명이 받았고, 9만 명이 아동급여를 수급하였으며, 장애급여에 약 30억 달러(CPP 급여총액의 14%)가 지출되었다.

(3) 민영연금(Private Pensions)

캐나다 연금체계의 최고단계는 민영연금이다. 민영연금은 OAS와 CPP 같은 공적연금이 제공하는 퇴직연금급여를 보충하여 보다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의 인준을 받아 운영되는 민영연금들은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여금에

대한 세금공제와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면제와 같은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민영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우선, 고용주 연금플랜(Employer Pension Plans: 앞으로 EPP로 표기)이 있다. 과거에 등록 연금플랜(Registered Pension Plan: RPPs)으로 불린 EPP는 고용주가 자신의 종업원을 위해 설정한 것으로서 기여금은 플랜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고용주가 절반 이상(때로는 전액)을 부담한다. 대기업은 독자적인 EPP를 설정하지만, 중소기업은 복수의 고용주들이 연합하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조를 통해서 EPP를 운용한다. 종업원은 입사 후 2년 이내에 EPP에 가입하도록 요청되지만 기업에 따라서 EPP 가입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다.

EPP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plan)으로서 미래에 받을 연금급여액(소득대체율)을 미리 확정해 둔 것이다. 급여총액은 플랜의 소득대체율, 근무기간, 소득 수준에 달려있다. 소득대체율은 플랜에 따라 다르며, 근속 1년당 평균소득의 2%가 최고한도이다. 2005년 현재 근속 1년당 연금급여액의 최고 한도는 연 1,722달러이고,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액의 최고한도는 연 64,155달러이다. 확정급여형의 EPP 가운데 일부는 연금급여액을 CPP의 급여액과 조정한다. 통합플랜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EPP는 CPP 급여액의 전액 혹은 상당부분을 연금급여액에서 삭감한다.

다른 하나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plan)으로서 연금 기여금(보험료)만 확정되어 있고 연금급여액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 형태에서는 최종적인 연금급여액이 적립금에 대한 투자수익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기여금은 소득의 18%를 한도로 하며, 금액으로는 2005년 현재 최고 15,500달러로 한정되어 있다. 두 형태 가운데서 확정급여형이 보다 일반적이다. 2002년 현재 EPP 가입자 550만 명 가운데서 82%인 450만 명이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었다.

EPP의 퇴직급여는 일반적인 퇴직연령인 65세부터 지급된다. 그러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최고 10년 일찍부터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연금급여액은 65세에 받을 급여액에 비해 감액된다. 반대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연금급여의 지급을 최고 69세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연금급여액은 65세에 받는 급여액에 비해 증액된다. EPP에서 제공되는 연금급여는 물가에 연동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물가인상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민영연금의 두 번째 형태는 퇴직저축플랜(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앞으로 RRSPs로 표기)이다. RRSPs는 EPP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EPP에 가입했다더라도 보다 많은 노후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저축과 비슷한 형태이다. 일반적인 개인저축과 다른 점은 RRSPs의 경우 EPP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며, 기여금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RRSPs는 은행,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신탁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기여금 운용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입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인이 RRSPs에 납부할 수 있는 기여금 최대액은 전년도 소득의 18%, 혹은 2005년 기준으로 15,500달러이다. EPP 가입자의 경우에는 기여금 한도액이 줄어든다. 만일 특정 연도에 기여금 한도액만큼 기여금을 내지 않았다면 그 차액은 미래의 원하는 시기에 자신의 기여금 한도액을 늘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 2004년 현재 기여금 한도액을 모두 채운 가입자의 비율은 단 7%였다.

RRSPs의 급여액은 퇴직할 때까지 납부한 기여금과 기여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수익에 의해 결정된다. RRSPs는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가입자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RRSPs에는 69세까지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연령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가입자는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퇴직소득

펀드(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 전환하거나, 그 돈으로 다른 연금플랜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2003년 12월 현재 25세에서 64세 사이의 노동력인구 가운데 약 50%인 790만 명이 민영연금에 가입해 있었다. EPP의 가입자는 피고용자의 39%인 560만 명이며, 이 수치는 1977년의 46% 및 1991년의 45%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특히, 2003년의 민영 부문 근로자의 EPP 가입률은 27%로서 1977년의 35%에서 8% 감소하였다. 반면에, 공공부문 근로자의 EPP 가입률은 86%로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이 민영부문 근로자의 RPP 가입률이 줄어든 것은 노동조합 조직률의 감소, 고용주들의 노동비용 감소 노력, CPP의 기여금 증가 등에서 연유한다. EPP와 같은 민영연금의 혜택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높은 고임금근로자들에게 주로 주어지며, 상당수의 민영부문 근로자들은 노후소득으로 OAS와 CPP의 급여만을 보장받고 있다.

2) 의료보장제도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메디케어(Medicare)라고 불리는 공적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인 주정부가 운영하며, 그 재원으로 의료보험료가 아니라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일반조세가 사용된다. 또한, 모든 캐나다 시민들(영주권자 포함)은 필요시 자유롭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메디케어가 보장하는 의료 항목들(즉, 급여대상 의료항목들)에 대해서는 이용자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의 공적의료제도는 의료보험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이다.

다만, 의료서비스 형태로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스웨덴이나

영국과는 달리 캐나다의 의료공급자들은 주로 민영병원이나 민간
부분의 의사들이며, 이들은 지역의료당국(Regional Health
Authorities: RHA)과의 계약을 통해 주로 의료서비스 건당 수수
료를 받는 단위수가방식(fee-for-service)으로 보상을 받는다. 현
재 의사의 총급여액 가운데서 83%는 단위수가방식에 따라 지급
된 것이며 나머지는 인당지급방식(capitated payment), 예방의료
목표치 달성 보너스, 신규환자 등록비, 그리고 월급(지역보건소에
서 일하는 의사 등은 월급만을 받는다)이다.

캐나다의 연간 의료비는 2001~2004년 평균 GDP 대비 9.9%이
다. 이 수치는 15%에 가까운 미국에 비하면 낮고, 8%에 약간 못
미치는 스웨덴보다는 높으며, 프랑스 및 영국과는 비슷하다.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지출비용만을 보면 2002년 현재 캐나다는 GDP
대비 7%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미국 및 영국보다 약간 높
고, 스웨덴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는 1% 이상 작다. 전체의료비용
에 대한 공공지출의 비율의 측면에서 캐나다는 70%로서 독일
(78%)이나 프랑스(76%)에 비해서는 낮고 네덜란드(62%)에 비해
서는 높았다.

(1) 의료보장제도의 운영기관과 원칙

캐나다의 공공의료제도의 운영과 전달체계는 매우 분권화되어
있다. 주정부는 조세를 통해 의료보장제도의 재원을 마련하고, 주
민들이 이용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주정부
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와의 협상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수준을 결정하고, 특수병원이나 공공보건시설들을 직접 운영하기
도 한다.

이와 같이 의료보장제도가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
은 공공의료제도가 처음에 각 주의 주도 하에 만들어졌다는 역사
적 배경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그 이후 주정부에 대해 의료재정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각 주가 운영하는 의료보장제도에 개입해왔다. 1968년에 연방정부는 의료보장법안(Medical Care Act)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모든 주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보조를 받는 대신에 연방정부가 의료보장제도의 운영방침으로 설정한 4개의 원칙들을 준수하게끔 되었다. 그 후 한 항목이 더 추가된 의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적운영(public administration)으로서 의료보장제도가 공적기관에 의해 비영리를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포괄성(comprehensiveness)으로서 의료보장제도가 병원이나 의사 등이 제공하는 모든 급여대상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보편성(universality)으로서 의료보장제도는 모든 시민들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보유이동성(portability)로서 각 주의 의료보장제도는 그 주의 주민이 다른 주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에도 그 주에서와 똑같은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접근성(accessibility)으로서 의료보장제도는 시민들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이용자부담 등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급여대상 의료항목

메디케어의 급여대상은 병원과 의사에 의해 제공되는 진단과 처방, 각종 검사, 입원, 수술,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들이다. 캐나다 의료보장제도는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 보장을 제공하며, 이에 대해서 이용자부담을 부과하지 않는다. 캐나다 건강법(Canada Health Act: CHA)에 따라서 모든 캐나다 주민들은 메디케어에서 보장하는 의료항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메디케어는 재택간병, 지역간병, 장기간병시설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의료보장제도의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표적인 의료항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우선 처방약과 일반약품이 있다. 처방약의 경우에는 각 주마다 설립되어 있는 처방약보험플랜을 통해 급여가 제공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처방약 비용의 54%는 개인 부담이다. 그리고 일반약품들은 모두 자비로 부담한다. 참고로, 2001년 현재 3명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캐나다 가정의 경우 한 번에 40달러 정도 하는 처방약을 일인당 10번 정도 구입하여 한 해 동안 1,200달러를 처방약 구입에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과서비스의 경우 수술 등의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공하지만 그 외에 보철 등에 대한 급여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현재 치과비용의 95%가 개인부담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일반적인 안과 치료는 메디케어의 급여대상이지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의 각종 시력보호 장치들은 92%가 개인부담이다. 물리치료, 심리치료, 자연요법, 대체요법(침, 접골 등)과 대체약품 등도 의료보장제도의 급여대상 항목이 아니며, 재택간병이나 장기간병시설 비용도 이용자가 부분적으로 부담한다.

2004년에 캐나다의 의료비용 총액은 1,303억 달러였다. 이 가운데서 공공부문(주정부 및 연방정부)이 약 70%를 부담했고, 나머지 30%는 민영부문의 부담이었다. 여기서 민영부문은 다시 개인부담 15%, 민영의료보험(주로 고용주가 부담하는 단체보험) 12.3%, 그리고 기타(병원의 기부금, 병원투자수익 등) 2.9%였다. 캐나다 의료보장제도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처방약과 치과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급여 분야의 비용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전체 의료비 가운데서 민영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까지 25.5%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1995년 28.7%, 2001년 30.1%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 민영부문에서는 민영보험의 부담이 더욱 빨리 증가하였다.

(3) 재원

캐나다 의료보장제도의 주된 재원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일반 조세이다. 주정부는 2004년 현재 전체 의료비의 64%를 부담하여 공공부문의 전체 부담액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만, 주정부 부담금 가운데 33%는 연방정부의 현금이전(cash transfer) 및 과세이전(tax transfer)이었으며, 이것들과 연방정부 직접보조금을 합칠 경우 캐나다 의료보장제도의 재정 가운데서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약 25%에 이른다.

주정부의 의료보장제도 지원금 가운데서 일부는 일반조세가 아니라 목적세(건강보험료)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세의 부과 방식과 액수는 주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서, 앨버타주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경우에는 일인당 혹은 한 가족당 정액 보험료를 부과한다. 액수는 앨버타주의 경우 일인당 연 538달러 혹은 가족당 연 1,056달러이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는 일인당 648달러 혹은 가족당 1,152달러이다. 반면에, 온타리오주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건강보험세액은 연소득 20,000달러는 면제, 연소득 25,000-36,000달러는 300달러, 그리고 200,600달러 이상은 900달러 등이다. 주정부의 의료보장제도 지원금에서 이러한 목적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한 연구에 의하면, 2000년대 초 앨버타주에서 건강보험료가 주정부의 의료보장제도 지원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라고 한다.

II. 군인연금

앞 장에서 서술하였듯이, 일반적인 캐나다 직장인들은 캐나다 국민연금(CPP)과 고용주 연금플랜(EPP)에 가입한다. 반면에, 캐나다군인은 캐나다 국민연금과 캐나다 군인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캐나다 국민연금의 정상적인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사회적 정년연령인 65세인데 반해서, 캐나다 군인연금은 30년 이상을 복무한 제대군인에 대해 정년연령인 55세(복무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일 경우에는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단, 2004년 7월 1일부로 캐나다군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군인연금의 지급개시 연령도 앞으로 높아질 것이다.

제대군인은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의 퇴직연금을 모두 수급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군인연금의 급여액은 거의 국민연금의 급여액만큼 삭감된다.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우선적으로 받고 나서 군인연금의 급여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에 비해 10년(복무기간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일찍 연금급여를 지급하고 연금급여액 수준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군인연금은 EPP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국민연금의 부가연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 개요

1) 역사

캐나다 군인연금은 1901년에 도입된 「국민군 연금 법안」

(Militia Pension Act)에서 시작했다. 캐나다 군인연금플랜(Canadian Forces Pension Plan)으로 불리는 현재의 군인연금은 1960년 3월 1일에 발효된 「캐나다 군인연금 법안」(Canadian Forces Superannuation Act: CFSA)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이후 보충사망급여 프로그램(Supplementary Death Benefit Plan)이 추가되는 등 몇 번의 개정을 거쳐 왔다.

최근의 개정으로는 2000년 4월 1일부터 군인연금의 기여금(연금보험료)을 캐나다 군인연금 펀드(CF Pension Fund)에 적립하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기여금이 캐나다 군인연금 계좌(CF Superannuation Account)에 적립되었는데, 이 계좌는 캐나다 정부채권에만 투자하여 안정적이지만 낮은 수익률을 얻었다. 반면에, 캐나다 군인연금 펀드는 독립기구인 공공부문 연금투자위원회(Public Sector Pension Investment Board)를 통해 민간금융시장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소 위험도는 크지만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 특징

캐나다 군인연금은 군인이라는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며, 캐나다 정부는 고용주로서 기여금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연금제도의 운용자 역할을 한다. 현재 군인연금은 국방부(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DND)에 의해 관리된다. 또한 캐나다 군인연금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s)으로서 복무기간에 따라 정해진 일정 수준의 소득대체율(income replacement rate)에 맞추어 연금급여액이 결정되어 있다. 캐나다 군인연금의 재정방식은 완전적립식(fully funded)으로서 한 해 지출되는 연금급여액은 가입자들과 정부가 내는 기여금과 적립금의 수익금으로

충당된다.

캐나다 군인연금의 급여액은 매년 1월1일에 지난해의 물가상승률을 완전히 반영하여 조정되며, 이런 점에서 캐나다 군인연금은 물가연동제를 채택하고 있다. 단, 연금급여액은 물가가 상승할 때는 인상되지만, 물가가 하락할 때는 조정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물가인상률에 비해서 임금인상률이 더 크다는 점에서 물가연동제 하에서는 연금급여의 상승분이 임금상승분보다 낮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볼 때 연금수급자들의 생활수준은 일반적인 봉급생활자들의 생활수준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2. 기여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기여금(연금보험료율)은 매 4년마다 법으로 정해지며, 기여금 인상분은 급여총액의 0.4% 이내여야 한다. 2000년에서 2003년까지의 기여금은 개인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여대상 최대소득(Yearly Maximum Contributory Earnings: YMCE)의 4%이며,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7.5%이다.

기여대상 최대소득은 앞 장에서 캐나다 국민연금을 소개할 때 서술한 대로 연금대상 최대소득(Yearly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YMPE)에서 연기초공제액(Year's Basic Exemption)을 뺀 액수로서 매년 법으로 정해진다. 2006년의 경우, 연기초공제액은 3,500달러이고 연금대상 최대소득은 42,100달러이므로, 기여대상 최대소득은 38,600달러(한화 약 3,280만원)가 된다. 예를 들어서, 연간소득이 5만 달러인 군인의 월 기여금은 178달러이다. 이 액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38,600 \times 0.04) + (7,900 \times 0.075)\} / 12 = (1,544 + 593) / 12 = 178$ 달러.

캐나다 군인연금의 기여금은 최대 35년 동안 납부할 수 있다.

이것은 뒤에서 서술하듯이 연금급여액의 계산식에서 최대 산업연수를 35년으로 한정된 것과 관련이 있다. 35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장래 받게 될 연금급여의 물가연동 인상분으로 기여대상 최대소득의 1%만을 납부한다.

<표 3> 캐나다군인의 연금기여금

(단위: %)

연 도	국민연금 기여금 (YMCE 기준)	군인연금 기여금 (YMCE 기준)	군인연금 기여금 (YMPE를 넘는 소득)
2000	3.9	4.0	7.5
2001	4.3	4.0	7.5
2002	4.7	4.0	7.5
2003	4.95	4.0	7.5

출처: (DND, 2005)

이와 함께, 캐나다군인은 일정한 소득을 지닌 모든 캐나다 시민들에게 강제 적용되는 캐나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기여금을 납부한다. 2003년 현재 국민연금 기여금은 연금대상 최대소득의 4.95%이다. 캐나다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캐나다군인의 연금기여금 총액은 정확하게 소득의 몇 %로 얘기하기 어렵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금대상 최대소득이 37,600달러이고 연기초공제액이 3,500달러이므로 기여대상 최대소득은 34,100달러이다. 따라서 67,600달러의 연봉을 받는 캐나다군 상사라면 34,100달러에 대해서 8.95%(국민연금 4.95%, 군인연금 4.0%)를 내고, 연금대상 최대소득을 넘는 30,000달러에 대해서는 7.5%를 추가로 납부한다. 이에 반해서, 36,000달러의 연봉을 받는 이등병은 자기소득의 8.95%만을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의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고용주로서의 정부는 군인연금에 대해서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 총액(YMCE에 대한 기여금과 YMPE를 넘는 소득에 대한 기여금의 합계)의 3.5배에 달하는 기여금을 지원한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정부는 군인연금 가입자 총소득의 17% 정도를 기여금으로 제공하였다. 가입자와 정부가 내는 캐나다 군인연금의 기여금은 캐나다군인 총소득의 22~23%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고용주로서의 정부는 캐나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캐나다군인의 기여금만큼의 분담금을 제공한다.

3. 급여

캐나다 군인연금은 제대군인의 퇴직 사유와 복무기간에 따라서 퇴직수당, 퇴직연금, 기여금상환(퇴직일시금), 유족연금 등을 제공한다.

1) 퇴직수당(severance pay)

퇴직수당은 모든 제대군인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금액은 퇴직 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복무완료 1년 당 7일분의 급여이며, 최대 210일치의 급여(거의 1년 연봉 수준)가 주어진다. 해당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가족에게 지급된다. 퇴직수당 가운데 10,000달러까지는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2) 퇴직연금(annuity)

퇴직연금의 급여는 과세대상이며,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월 1일에 조정된다. 퇴직금은 복무기간이 30년 이상인 제대군인이 정년연령인 55세(복무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세)에 도달했을 때부터 지급된다. 그러나 복무와 관련된 장애를 입어 퇴직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장애를 입은 직후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완전연금)의 급여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text{퇴직연금 급여액} = 2\% \times \text{복무연수} \times (\text{복무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연속적인 5년 동안의 평균 소득})$
--

위의 계산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보면, 35년 동안 복무하고 가장 소득이 높았던 연속적인 5개년의 평균 소득이 60,000달러인 군인의 연금급여액은 연 42,000달러($0.02 \times 35 \times 60,000$), 혹은 월 3,500달러가 된다. 또한, 평균소득이 같고 복무기간이 30년인 군인의 연금급여액은 연 36,000달러($0.02 \times 30 \times 60,000$), 혹은 월 3,000달러가 된다. 이 두 사람은 복무기간이 30년 이상이므로 정년연령인 55세부터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위의 계산식에서 복무연수는 최대 35년(기여금 납부 연수와 일치)으로 제한되며, 여기에 앞에 있는 승수 2%를 곱하면 70%가 된다. 최대 복무연수 35년은 군인연금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입대자들의 평균연령이 20세이고 정년연령이 55세였던 데 기초하고 있다. 캐나다 군인연금은 35년 이상을 복무한 완전연금의 수급자에 대해서 70%의 소득대체율(연금급여액을 퇴직 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캐나다의 다른 연금들이나 서구 다른 국가들의 연금들의 소득대체율에 비해서 무척 높은 것이다.

또한, 연금급여액 계산을 위한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모든 기간의 평균소득을 채택하는 일반적인 공적연금들과는 달리 소득이 가장 높았던 5개년만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캐나다 군인연금은 매우 관대한 것이다. 고용주로서의 정부가 기여금 총액의 80% 가까이를 부담하여 가입자인 캐나다군인이 적은 기여금으로 높은 수준의 연금급여액을 보장받는다라는 점에서도 캐나다 군인연금의 관대성이 잘 드러난다.

복무와 관련된 장애를 입었다든지, 정년(일반적으로 55세)이나 계급정년에 도달했다든지, 아니면 군대의 조직개혁과 같은 다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에 제시된 퇴직연금 급여액 계산식에 따라서 완전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중간 정도의 교전상태(intermediate engagement)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제대한 사람에 대해서도 완전연금이 제공된다. 반면에, 이상과 같은 조건을 지니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의 급여액이 일정 정도 삭감된다. 연금급여액의 삭감의 정도는 사병과 장교에 따라 조금 다르다.

사병인 경우에는 정년(55세)에서 본인이 제대했을 때의 연령을 뺀 수치에 5%를 곱한 수치와 25년에서 본인이 복무한 연수를 뺀 수치에 5%를 곱한 수치 가운데서 작은 것을 골라 그 수치만큼 완전연금의 급여액을 삭감한다. 예를 들어서, 22년을 복무하고 54세에 자발적으로 제대한 군인의 경우에는 $(25-22 = 3 \times 5\% = 15\%)$ 와 $(55-54 = 1 \times 5\% = 5\%)$ 가운데서 작은 쪽인 5%만큼 연금급여액이 삭감된다. 만일 위의 퇴직연금 급여액 계산식에 따라 결정된 연금급여액이 연 40,000달러라면, 이 사람은 그 액수의 5%인 2,000달러가 삭감되어 연 38,000달러의 연금급여를 60세부터 받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 사람이 27년을 복무하고 54세에 자발적으로 제대하였다면 복무기간이 25년을 넘었기 때문에 연금급여액은 삭감되지 않는다. 다만, 복무기간이 30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60세가 되어서야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장교인 경우에는 정년(55세)에서 본인이 제대했을 때의 연령을 뺀 수치에 5%를 곱한 수치나 28년에서 본인이 복무한 연수를 뺀 수치에 5%를 곱한 수치 가운데 적은 수치만큼 완전연금의 급여액을 삭감한다. 예를 들어서, 25년을 복무하고 50세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28-25 = 3 \times 5\% = 15\%)$ 와 $(55-50 = 5 \times 5\% = 25\%)$ 가운데 작은 수치인 15%만큼 연금급여액이 삭감된다. 위의 퇴직연금 급여액 계산식에 따라 결정된 연금급여액이 연 50,000달러라면, 이 사람은 그 액수의 15%인 7,500달러가 삭감되어 연 42,500달러의 연금급여를 60세부터 받게 되는 것이다.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복무기간이 30년 미만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시된 퇴직연금급여액 계산식에 따른 완전연금이 즉시 지급된다. 10년 이상 복무하고 장애를 입어 제대한 사람과 제대 후 장애를 입은 사람, 복무기간이 26년인 59세의 제대군인, 복무기간이 27년인 58세의 제대군인, 복무기간이 28년인 57세의 제대군인, 복무기간이 29년인 56세의 제대군인.

캐나다 군인연금제도에 장애연금이라는 용어는 없다. 다만, 10년 이상 복무하고 장애를 입어 제대한 사람에 대해서 완전연금 형태의 퇴직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장애연금으로 부를 수는 있을 것이다. 캐나다 군인연금의 장애연금은 보훈제도상의 상이연금과는 관계없이 지급된다. 전자는 자신이 낸 기여금에 기초하여 지급받는 개인의 권리인데 반해서, 후자는 개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4장 8절에 보다 상세하게 서술해 두었다. 또한, 이 장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록>에서 보듯이, 군인연금의 장애연금급여액은 퇴직연금급여액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국민연금의 급여액에 따라 조정된다.

3) 퇴직일시금(기여금 상환: Return of Pension Contributions)

자발적으로 제대한 사람 가운데서 복무연수가 10년 미만인 사람들은 제대를 하게 된 사유나 연령 등과 관계없이 군인연금에 자신이 납부했던 기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퇴직일시금의 형태로 돌려받는다. 현재 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 4%의 복리이자이다.

자발적으로 제대한 사람 가운데서 복무연수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다. 우선 복무와 관련되어 장애를 입어 전역한 경우에는 제대 직후부터 완전연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장애를 입지 않고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제대한 사람들은 퇴직일시금과 거치연금(deferred annuity)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거치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본인이 60세가 된 때부터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급여액은 위의 연금급여 계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거치연금을 선택하고 나서 장애를 입게 되면 60세 이전이라도 바로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유족급여(Survivor Benefits)

5년 이상 복무한 후 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유족급여가 제공된다. 군인연금의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도중에 제대군인이 사망했을 때에도 유가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되지만, 급여액이 지나치게 작을 경우에는 기여금상환의 형태로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유족급여에는 배우자(동성동거자를 포함하여 12개월 이상 동거한 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에게 지급되는 유족수당(Survivor's Allowance)과 부양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녀수당(Allowances to Children)이 있다.

일반적으로 유족수당은 앞에서 서술한 퇴직연금급여액 계산식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연금급여액의 절반이다. 예를 들어서, 만일 20년 복무 후 사망했다면, 유족수당은 그 사망군인의 복무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연속적인 5년 동안의 평균 소득의 20%(2 X 20 ÷ 2)가 되는 것이다. 다른 급여들과는 달리, 캐나다 군인연금의 유족수당과 캐나다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동시에 수급할 수 있으며, 급여액은 조정하지 않고 두 제도에서 정해진 급여액을 모두 그대로 받는다.

자녀수당은 18세 미만의 부양아동에게 지급된다.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부양아동은 풀타임 학생일 경우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녀수당은 부양아동 일인당 사망군인의 퇴직연금급여액의 1/10이다. 만일 유족수당을 받을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수당은 퇴직연금급여액의 1/5이 된다. 자녀수당의 최고액은 유족수당의 4/5이며,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퇴직연금급여액의 4/5이다.

4. 가입자와 수급자

1) 현황

캐나다 군인연금의 가입자는 2003회계연도(2003년 4월~2004년 3월)에 모두 60,859명이었다.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약 270명 증가한 것이었다. 이 기간 동안 군인연금의 퇴직연금 수급자는 82,483명이고, 유족급여의 수급자는 22,551명(자녀수당 수급자 763명 포함)이다. 이 둘을 합치면 연금수급자 수는 105,034명이고, 여기에 기여금상환을 받은 1,574명을 합치면 군인연금의 수급자는 모두 107,180명이었다.

연금수급자의 숫자를 가입자 총수로 나누면 약 1.73(105,034/60,859)이 되는데, 이것은 현재 기여금을 납부하는 군인 한 사람이 1.73명의 연금수급자를 부양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1.73에 달하는 캐나다 군인연금의 부양률은 서구의 일반적인 연금의 부양률에 비해 높은 것이다.

2) 수급자의 급여액수별 분포

<표 4> 캐나다 군인연금의 급여액수별 수급자 수(2004년 3월말)

연금급여액 (달러)	수급자 수		
	퇴직연금	유족수당	합계
0-2,000	33	88	121
2,001-4,000	272	1,239	1,511
4,001-6,000	1,376	2,719	4,045
6,001-8,000	2,076	4,825	6,901
8,001-10,000	3,971	4,568	8,539
10,001-12,000	5,567	2,917	8,484
12,001-14,000	6,622	1,730	8,352
14,001-16,000	8,521	1,266	9,787
16,001-18,000	8,845	9901	9,746
18,001-20,000	7,603	577	8,180
20,001-22,000	6,075	356	6,431
22,001-24,000	4,670	191	4,862
24,001-26,000	4,013	124	4,137
26,001-28,000	3,544	88	3,632
28,001-30,000	2,959	58	3,017
30,001-32,000	2,713	51	2,764
32,001-34,000	2,201	34	2,235
34,001-36,000	2,137	18	2,155
36,001-38,000	1,623	14	1,637
38,001-40,000	1,387	9	1,396
40,001-42,000	1,074	3	1,077
42,001-44,000	1,016	3	1,019

44,001-46,000	907	3	910
46,001-48,000	551	3	554
48,001-50,000	496	0	496
50,001-52,000	465	1	466
52,001-54,000	291	1	292
54,001-56,000	243	0	243
56,001-58,000	334	0	334
58,001-60,000	168	0	168
60,000 이상	780	0	780
합계	82,483	21,788	104,271

출처: (DND, 2004)

<표 4>에는 연금급여액 수준별로 퇴직연금과 유족수당의 수급자 수가 제시되어 있다. 퇴직연금의 급여액별 수급자 분포를 1만 달러 단위로 묶어서 보면, 10,001~20,000달러가 37,158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21,261명이 속해 있는 20,001~30,000달러로서 전체 수급자의 25.8%이며, 30,001~40,000달러는 10,061명으로서 전체 수급자의 12.2%에 해당한다. 10,000달러 이하 7,673명으로서 9.3%이며, 40,001달러 이상은 6,325명으로서 7.7%를 차지하고 있다. 10,000달러 이하의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20년 이상을 복무했지만 퇴직연금 급여액 계산식의 최대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제대하였거나 장애를 입어 중도에 제대한 사람들일 것이다.

<표 4>에서 볼 때 퇴직연금급여액의 중위값(median)은 18,001~20,000달러이다. 또한 다음의 <표 6>에 나와 있는 대로 2003회계연도에 19억 9천6백만 달러였던 퇴직연금급여액(유족수당 포함)을 <표 4>의 연금급여 수급자 총수로 나누면 퇴직연금급여액의 평균값은 약 19,140달러가 된다. 따라서 캐나다 군인연금의 일인당 수급액의 대푯값을 19,000달러로 잡는다면, OAS(노령보장연금)의 평균치 5,500달러(부부인 경우 11,000달러)를 합쳐서 제대군인의 연금소득 총액은 연 24,500달러(부부인 경우 30,000달

러)가 된다. 이 수치는 2006년 캐나다 일반가구 소득의 중위값과 비슷한 것으로서 캐나다 군인연금의 급여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용주 연금플랜의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반적인 캐나다 노인들은 OAS와 캐나다 국민연금에서 연 12,000달러(부부인 경우 17,500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연금소득을 얻고 있을 따름이다.

1장 2절에서 보듯이 장기복무사병의 연봉이 6~7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군인연금의 퇴직연금급여액 평균치는 낮은 편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많은 캐나다군인들이 정년이전이나 30년간 복무 이전에 제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퇴직연금급여가 물가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생활수준의 향상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족수당급여액(자녀수당 제외)에서는 10,000달러 이하에 13,430명이 분포하여 전체 수급자의 61.7%를 차지하고 있고, 10,001~20,000달러에 7,391명이 분포하여 전체수급자의 33.9%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유족수당 급여액에서는 전체수급자의 96%가 20,000달러 이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족수당급여액이 퇴직연금급여액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은 유족수당이 퇴직연금의 1/2 수준으로 제공되는데다가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복무 중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수급자의 연령별 분포

<표 5> 캐나다 군인연금 퇴직연금의 연령대별 수급자 추이

연도	39 이하	40-49	50-59	60-69	70-79	80-89	90 이상	합계
1995	1,449	7,359	20,243	24,826	15,673	2,681	54	72,321

2000	3,167	12,362	19,712	24,487	16,256	4,566	131	80,681
2004	1,694	15,862	17,236	22,496	17,894	7,031	270	82,483

주: 각 연도의 3월말 통계임

출처: (DND, 1998; DND, 2004)

<표 5>는 캐나다 군인연금의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1995년에서 2004년 사이에 수급자수는 72,321명에서 82,483명으로 10,000명 이상 늘어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의 수급자수가 전체 증가자수의 85%에 해당하는 8,500명 정도나 늘어났다. 이것은 현재 평균 제대연령이 36세로 나타나는 등 최근으로 올수록 평균 제대연령이 낮아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년 이상 복무한 경우에만 연금수급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현역 군인들이 연금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최소복무기간을 채운 다음에 제대하려고 하며, 이로 인해서 40대의 연금수급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50대와 60대의 연금수급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신, 7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수급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1995년에서 2004년 사이에 70대에서는 2,200명, 80대 이상에서는 4,500명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와 같이 특히 8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수급자가 170%나 늘어난 것은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캐나다 군인연금의 수급자 연령대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수급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현재는 연령대별로 볼 때 연금수급자가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으로 양극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저연령층에서의 증가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반면에 고연령층에서의 증가는 가속화될 것이다. 다른 공적연금들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군인연금도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의 위기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5. 재정

<표 6>에는 캐나다 군인연금의 재정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2003년의 수입총액은 45억 달러를 조금 넘었고, 그 가운데 자산수입(이자소득 및 투자수입)이 37억 4천만 달러로 약 83%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한 기여금인데, 이 가운데 정부보조금이 6억 2천만 달러로 79%를 차지하였다. 2002년과 비교할 때 수입총액이 7억 9천만 달러 늘어났으며, 그 대부분은 7억 달러를 넘는 자산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표 6> 캐나다 군인연금의 재정 현황

			2003년	2002년
당 기 회 계	수입	총액	45.32	37.40
		기여금	7.91	7.12
		(가입자)	(1.70)	(1.62)
		(정부)	(6.21)	(5.50)
		자산수입	37.41	30.23
		연금이전	0.04	0.05
	지출	총액	27.06	21.75
		급여	20.13	19.19
		(연금)	(19.96)	(19.11)
		환불/이전	0.47	0.47
보험수리조정		6.30	1.98	
	운영비	0.16	0.11	
	수지차	18.26	15.65	
자 산 현	순자산	431.78	417.03	
	미지급연금비용	403.04	384.70	
	잉여자산	28.74	32.33	

황			
---	--	--	--

(단위: 억 달러)

주 1: 2003회계연도는 2003년 4월에서 2004년 3월까지, 2002회계연도는 2002년 4월에서 2003년 3월까지임.

주 2: 자산수입에는 캐나다 군인연금 계좌(CF Superannuation Account)의 이자소득과 캐나다 군인연금 펀드(CF Pension Fund)의 투자수익, 그리고 자산가치 평가액의 증가분이 포함.

출처: (DND, 2004)

다음에, 2003년의 지출총액은 27억 달러였으며, 지출의 대부분은 20억 달러가 투입된 급여지급에 사용되었다. 캐나다 군인연금의 급여 가운데 연금이 19억 9천6백만 달러로 절대 다수였고, 일시금은 거의 무시할만한 수준이었다. 6억3천만 달러를 기록한 보험수리조정(actuarial adjustment)은 3년마다 연금기금의 수익을 평가하여 잉여수익이 있을 경우 그것을 가입자의 기여금이나 정부의 보조금을 삭감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군인연금의 보험수리조정액은 정부의 회계국(Office of Actuary)에서 계산하여 의회에 보고된다. 운영비는 1,600만 달러인데, 이것을 급여액으로 나누면 0.79%가 되어 캐나다 군인연금의 운영효율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캐나다 국민연금(CPP)의 급여액에 대한 운영비의 비율은 1.95%(4억2천2백만 달러/216억 달러)였다. 2002년과 비교할 때 2003년의 지출총액은 약 5억 3천만 달러 늘어났다. 지출증가분 가운데서 급여는 1억 달러 정도인데 반해서 보험수리조정이 4억3천만 달러를 차지하였다.

2003년 당기회계에서는 수입총액이 45억 3천만 달러이고 지출총액이 27억 달러이므로 18억 3천만 달러의 흑자가 발생하였다. 이 수치는 15억 7천만 달러의 흑자가 발생한 2002년에 비해서 2억 6천만 달러 더 늘어난 것이다. 이와 같이 한 해에 필요한 연금

급여비용을 그 해의 수입으로 모두 충당하고 일부를 적립한다는 점에서 캐나다 군인연금은 완전적립식 연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서구의 일반적인 공적연금과는 달리 캐나다 군인연금이 완전적립식의 재정운용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고용주로서의 정부가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의 3.5배 이상의 보조금을 매해 제공하여 그 적립금을 바탕으로 막대한 자산수입을 얻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3년의 경우, 가입자의 기여금과 정부의 보조금 총액은 7억 9천만 달러로서 급여총액의 40%, 혹은 지출총액의 3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자산수입이 막대하였기 때문에 당기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매해 당기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캐나다 군인연금의 재정 상태는 매우 양호하게 되었다. 2003년의 순자산은 431억 8천만 달러로서 2002년에 비해 14억 7천만 달러 정도 늘어났다. 캐나다 군인연금은 현재 명시적인 부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장차 지급해야 할 연금급여액이라는 잠재적인 부채를 갖고 있다. 이것을 미지급연금비용(accrued pension benefits)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은 장래의 인플레이션, 이자율, 투자수익, 임금상승률, 노동력 구성, 퇴직률 및 사망률 등에 대한 예상치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약 403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이 액수를 순자산에서 빼면 2004년 3월말 현재 캐나다 군인연금은 28억 7천만 달러 정도의 잉여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수치는 2002년의 잉여자산 32억 3천만 달러에 비해 약 3억 6천만 달러 감소한 것이며, 이것은 노령화의 진전에 따라 연금수급자수가 많아지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캐나다 군인연금이 당기수지 적자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6. 기타 급여들

1) 보충사망급여(Supplementary Death Benefits)

캐나다 군인연금의 가입자들은 보충사망급여플랜에 부가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충사망급여는 가입자들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 대해 군인연금의 유족급여 이외에 일시금 형태의 생계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며, 생명보험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기여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보충사망급여의 기여금은 소득의 약 0.24%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 41,000달러인 경우 보충사망급여의 기여금은 연 98.40달러, 혹은 월 8.20달러가 된다. 군인연금의 퇴직연금의 경우 기여금 납부기간이 최대 35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보충사망급여의 기여금은 가입자가 복무하는 한 계속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로서의 정부는 보충사망급여액 비용의 1/12를 기여금으로 제공한다.

보충사망급여의 급여액은 사망군인의 연봉의 두 배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 50,000달러의 군인이 사망한다면 군인연금의 유족급여 이외에 100,000달러가 일시금으로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보충사망급여는 60세 이후에는 매년 10%씩 감액된다. 예를 들어서, 60세 이전에 사망했을 때 보충사망급여가 100,000달러였다면, 그 액수는 61세에는 90,000달러, 62세에는 80,000달러와 같은 식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줄어들다 보면 70세가 될 때 보충사망급여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단, 제대 직후 연금을 바로 받은 사람은 65세 이후 5,000달러의 보충사망급여를 보장 받는다.

2) 소득보상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가입자들은 군인소득보장보험(Social Income Security Insurance Plan: SISIP)이라는 군인보험 전문보험사의 여러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장기 장애 단체보험플랜(Long Term Disability Group Insurance Plan: LTD)은 장애를 보상하는 단체보험으로서 전체 보험료 가운데 85%는 국방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LTD는 장애를 입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하게 된 군인에 대해서 소득보상금을 제공하며, 그 액수는 퇴직 전 소득의 75%이다. 단, LTD의 급여액은 보훈제도의 상이연금이나 소득상실급여 등과 캐나다 군인연금/국민연금의 급여액 및 근로소득을 공제한 다음에 지급된다. 보훈제도의 상이연금이나 소득상실급여 등이 복무와 관련되어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서, LTD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장애를 입은 모든 군인들에게 보상금을 제공한다. 지급기간은 최대 24개월이다.

다음에, 상해보험플랜(Accidental Dismemberment Insurance Plan: ADIP)은 캐나다군인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며, 보험료는 국방부에서 전액 부담한다. ADIP는 복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손, 발, 눈, 청력, 혹은 언어능력을 잃은 군인에게 일시금으로서의 장애보상금을 제공한다. 보상금은 두 손, 두 발, 두 눈의 시력, 두 귀의 청력, 혹은 언어능력을 잃었을 때에는 25만 달러, 한쪽만을 잃었을 때는 12만5천 달러, 같은 손의 엄지와 검지를 잃었을 때는 62,500달러 등 절단 내지는 기능이 상실된 부위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장애보상금은 보훈제도상의 상이연금이나 상이보상금의 수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제공된다.

3) 예비군 퇴직보상금(Reserve Force Retirement Gratuity: RFRG)

이 제도는 퇴직하는 예비군에 대해서 퇴직일시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급여액은 정규군의 퇴직수당과 동일하게 퇴직 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복무완료 1년 당 7일분의 급여이며, 최대 210일치의 급여가 주어진다. 예비군 복무자가 의학상의 문제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퇴직할 때는 위에 서술한 대로 급여가 주어지지만, 자발적인 퇴직일 경우에는 급여수준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우선 복무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복무기간이 10년에서 20년 사이일 때는 급여수준은 위에 서술한 급여수준의 절반이다.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일 때는 비자발적 퇴직 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급여가 제공된다. 예비군 퇴직보상금은 해당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가족에게 지급된다.

<부록>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액 조정

1966년 1월부터 시행된 캐나다 국민연금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캐나다 시민들에게 강제 적용되며, 가입자가 65세가 되면 연금대상 최대소득(YMPE)의 25%를 완전연금으로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군인연금의 퇴직연금은 55세(20년 이상 30년 미만 복무 시 60세)부터 지급된다. 캐나다 군인연금의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으로부터도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따라서 군인연금의 급여액을 조정한다.

$\text{군인연금 급여액 삭감액} = 0.007 \times (\text{1966년 1월 1일 이후의 복무연수}) \times (\text{연금대상 최대소득의 5개년 평균})$
--

이 계산식에서 연금대상 최대소득의 5개년 평균은 퇴직 연도와 그 이전 4개년의 연금대상 최대소득들을 평균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제대한 사람의 경우에는 1996년에서 2000년까지의 연금대상 최대소득인 35,400달러, 35,800달러, 36,900달러, 37,400달러, 37,600달러의 평균치인 36,620달러를 삭감액 계산식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단, 평균소득이 연금대상 최대소득에 미달할 경우에는 본인의 실제 소득의 5개년 평균치를 사용한다. 위의 계산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보면, 35년을 복무하고 2000년에 제대하여 2005년에 65세가 된 사람의 경우에는 기존의 군인연금 급여액에서 연 8,972달러($0.007 \times 35 \times 36,620$) 혹은 월 748달러만큼 삭감된다.

국민연금의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됨에 따라 군인연금의 급여액이 삭감되면 개인이 수급하는 연금급여총액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군인연금의 삭감액은 위의 계산식에 따라 분명한 반면에, 국민연금의 퇴직급여는 매우 복잡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반적으로 군인연금의 삭감액은 국민연금의 퇴직연금급여액과 비슷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장애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캐나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심각하고 장기적인 장애를 입은 65세 이하의 캐나다 국민에게 제공되며, 캐나다군인도 그 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제대군인은 캐나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그 사실을 군인연금의 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급여액만큼 군인연금의 장애연금급여액이 삭감된다.

Ⅲ. 보훈제도 개관

1. 보훈제도 연혁

<표 7> 보훈제도 연표

연 도	내 용
1885	· Northwest 전쟁 참전 군인에 대해 메달 및 토지증서 수여
1915	· 군사병원위원회(Military Hospitals Commission) 설립
1918	· 제대군인 사회정착부(Department of Soldiers' Civil Re-establishment) 창설
1919	· 상이연금 법안(Pension Act) · 제대군인 경작지 정착지원 법안(Act to Assist Returned Soldiers in Settling upon the Land)
1930	· 제대군인국(Veterans' Bureau) 창설
1936	· 제대군인 지원위원회(Veterans' Assistance Commission) 창설
1941	· 프리비위원회(Privy Council) 훈령 7633호 선포
1944	·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창설 · 참전군인 보조금지원 법안(War Service Grants Act)
1945	· 제대군인 재활 법안(Veterans Rehabilitation Act)
1946	· 제대군인 사업자금 대부 법안(Veterans' Business and Professional Loans Act)
1954	· 제대군인 지원 법안(Veterans Benefits Act)
1969	· 군인소득보장보험(Service Income Security Insurance Plan: SISIP) 도입
1981	· 제대군인 자립지원 프로그램(Veterans Independence Program: VIP) 도입
1984	· 제대군인부 지방이전
1995	· 상이연금 법안 개정
1999	· 국방부-제대군인부 조정위원회(DND-VAC Steering Committee) 창설
2006	· 제대군인 신현장(New Veterans Chapter) 발효

<표 7>에서 보듯이, 기록상으로 볼 때 캐나다 보훈제도의 역사는 1885년의 Northwest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메달과 경작할 토지의 증서를 제공한 데서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현대적 의미의 캐나다 보훈제도가 시작된 것은 1914년에 발발한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였다. 캐나다 보훈제도의 역사는 발달단계에 따라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제 1단계

캐나다 보훈제도의 제 1단계는 1차 세계대전의 발발에서부터 2차 세계대전의 종전 무렵까지이다. 1915년에 캐나다 정부는 「군사병원위원회」를 창설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참전군인을 위한 병원들을 관리·운영하였다. 이 위원회는 이후 캐나다 전역에 퍼져 있는 제대군인 병원들의 네트워크로 발전하였다. 1918년에는 정부에 「제대군인 사회정착부」가 만들어졌다. 이 부서는 상이제대군인에 대해 광범위한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들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각종 직업훈련을 제공하였다.

캐나다 보훈역사의 일대 전환점이 된 것은 1919년의 「상이연금 법안」의 시행이었다. 이 법의 도입 이전에 상이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일시적이거나 비체계적인 것이었다. 「상이연금 법안」의 도입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과 그 유가족은 일정 액수의 생활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상이연금은 캐나다 보훈제도의 중핵이며 보훈제도의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해 시행된 「제대군인 경작지 정착지원 법안」은 모든 제대군인에 대해 토지비용의 10%만 선불하고 경작지를 구매하도록 지원하였다.

1930년에는 「제대군인국」이 창설되었다. 과거에는 제대군인에 대한 보훈업무가 연금후생부(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의 산하 부서들에서 부분적으로 수행되었지만, 「제대군인국」의 창설에 의해

보훈업무가 독자적인 정부기구에 의해 체계적으로 담당되었다. 1936년에 창설된 「제대군인 지원위원회」는 세계대공황 이후의 경제침체에 직업을 갖지 못한 제대군인들에 대해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직장을 찾아주는 일을 수행하였다.

1941년에는 「프리비위원회 훈령 7633호」가 선포되었다. 과거에는 장애를 입은 참전군인이나 미성년 참전군인에 대해서만 재활급여가 지급되었던 데 반해서, 이 훈령은 참전군인들 모두에 대해 의료서비스 및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재활급여를 보편적인 급여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훈령은 캐나다 보훈제도의 역사에서뿐 아니라 캐나다 사회정책의 역사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에서 서술한 대로 캐나다 보훈제도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들의 발발과 그에 대한 캐나다의 참전에 따라 정착되고 발달되었다.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캐나다 보훈제도의 주요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도입되었다. 보훈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이후 노령보장연금이나 메디케어 혹은 가족수당과 같은 캐나다의 각종 사회보장프로그램들의 도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 보훈제도의 역사는 전쟁이 복지국가의 발달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전쟁-복지 가설’(warfare-welfare hypothesis)을 지지하는 경험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2) 제 2단계

캐나다 보훈제도 발달의 제 2단계는 2차 세계대전의 종전 무렵부터 현재까지이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두고 캐나다 정부는 막대한 수의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그 첫 단추로 캐나다 정부는 보훈제도를 총괄하는 정부 주무부서로서 1944년에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를 창설하였다. 이와 함께 「참전군인 보조금지원 법안」도 발효시켰는데, 이에 따라서 참전군인들에 대해서 복무기간과 파견 장소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금과 정착자금이 제공되었다.

1945년에는 「제대군인 재활 법안」이 발효되었다. 이 법안에 의해 제대군인부는 모든 참전군인에 대해서 사회정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고, 실업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 참전군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했다. 이 법안은 특히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를 중점적으로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서 1949-1950년 캐나다 대학 재적생의 21%가 제대군인으로 채워졌다. 1946년의 「제대군인 사업자금 대부 법안」은 자격을 지닌 참전군인에 대해 창업자금을 대부해주었으며, 1947년까지 약 64,000명의 제대군인이 모두 2,750만 달러를 대부받았다.

1954년에 만들어진 「제대군인 지원 법안」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참전군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던 각종 보훈제도들이 한국전쟁의 참전군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 법의 제정 이전에는 한국전 참전군인들에 대한 보상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던 한국전 참전 제대군인들은 1973년에 「한국전 참전 제대군인 협의회」(Korea Veterans Association of Canada)를 구성하여 자신들의 권리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캐나다의 보훈제도는 상이연금의 존재에서 보듯이 주로 복무와 관련하여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이유로 인해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여 제대한 군인은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여 생활상의 어려움이 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9년에 군인소득보장보험이 도입되었다. 국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이 보험의 도입으로 인해서 모든 캐나다군인은 복무와 관련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인

해 신체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정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81년에는 「제대군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상이제대군인의 경우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보훈제도에 서 부담하지만, 입원을 하지 않고 자택에서 가료를 하는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자기부담액수가 컸다. 이 프로그램은 상이제대군인의 자택간병과 자립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상이제대군인의 사회복지를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훈제도의 의료급여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 캐나다 정부는 수도 오타와에 집중되어 있었던 정부부처의 지방이전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76년에 제대군인부는 캐나다의 10개 주 가운데 가장 작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의 샬럿타운으로 이전하도록 결정되었다. 1979년 6월에 1차적으로 300명의 직원이 샬럿타운으로 이전했고, 1984년에는 제대군인부 본부의 전 부서가 샬럿타운 출신 제대군인으로 장관을 지냈던 사람의 이름을 딴 Daniel J. MacDonald Building으로 이전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약간의 개정안들이 시행된 것 이외에 보훈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그 개정안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1995년의 상이연금 개혁이었다. 이 개혁으로 인해서 상이연금과 관련된 조직들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과거 독립조직이었던 연금옹호부(Bureau of Pension Advocates)가 제대군인부 산하조직으로 흡수되었고, 캐나다 연금위원회(Canadian Pension Commission)와 제대군인 소청위원회(Veterans Appeal Board)가 통합되어 「제대군인 재심 및 이의신청 위원회」(Veterans Review and Appeal Board)라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다.

캐나다의 보훈제도는 제대군인부에 의해 통합 관리되지만 성격상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1997년

에 그 두 부서에 상호연락관이 설치되었으며, 1999년에는 「제대군인부-국방부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두 부서의 부차관보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를 통해 현역군인들의 니즈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현역군인의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훈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4월 1일에 캐나다정부는 「캐나다 현역 및 제대 군인 사회복귀 및 보상 법안」(The Canadian Forces Members and Veterans Re-establishment and Compensation Act)을 발효시켰다. 「제대군인 신헌장」(New Veterans Charter)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확립된 캐나다의 보훈제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가장 커다란 변화는 제대군인, 특히 상이제대군인의 자립생활을 장려하기 위해서 연금의 비중을 줄이고 일시금의 비중을 높인 것과 창업이나 구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강화한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제대군인 신헌장」에 따라 캐나다 보훈제도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2. 제대군인부 조직

1) 현황

캐나다의 보훈제도는 일반적으로 VAC라고 불리는 캐나다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Canada)에서 관리한다. 1944년에 참전제대군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정부조직으로 설립된 제대군인부에는 현재 장관 1명, 차관 1명, 차관보 1명이외에 3,400(풀타임 환산인원)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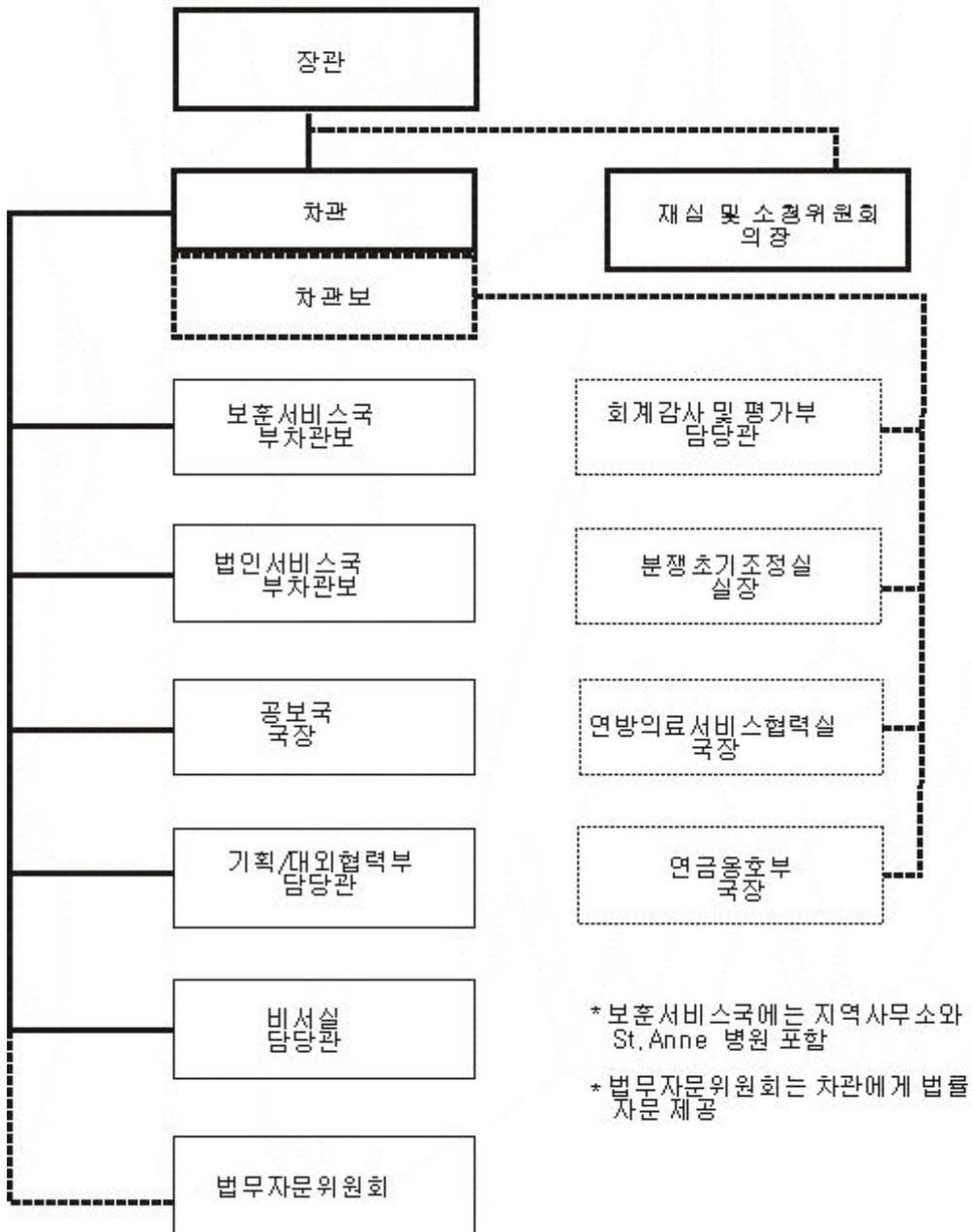
원의 분포는 상이연금과 사망급여 및 생활보조금 분야에 360명, 의료서비스 분야에 1,220명, 기념사업분야에 150명, 서비스 및 급여 전달분야에 1,700명이다. 이외에, 「제대군인 재심 및 소청위원회」에 140명이 근무하고 있다.

제대군인부의 인력은 설립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것은 보훈급여의 수급대상자가 줄어드는데다가 제대군인부 직영 병원들이 대부분 폐쇄되었고 제대군인부가 사무자동화와 다양한 형태의 조직혁신 방안들을 실천해 왔기 때문이다. 제대군인부 산하 병원의 의료 인력을 포함할 경우 제대군인부의 직원은 1947년 22,000명이었다. 이 수치는 1961년에 13,453명으로 9천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1961년의 직원들 가운데 10,127명이 의료 인력이었고, 약 400명이 제대군인 소청위원회 소속이었으며, 나머지 3,000명이 보훈급여와 관련된 일들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1990년대 말 이래 제대군인부 직원의 수는 의료 인력을 포함하여 3,000명 남짓한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2) 조직

캐나다의 보훈업무는 제대군인부와 「제대군인 재심 및 소청위원회」의 두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제대군인부의 조직은 차관의 지휘를 받는 세 개의 국(branch)과 두 개의 부서, 그리고 차관보의 지휘계통 하에 있는 네 개의 부서로 구성된다. 제대군인부 하부조직들의 명칭과 관장

<그림 1> 제대군인부 조직도



업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훈서비스국(Veterans Services Branch)은 상이연금과 의료서비스를 전달하고 제대군인들에 대해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산하에는 보훈전문 병원인 세인트 앤(St. Anne) 병원과 각 지역의 제대군인부 사무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샬럿타운에 있는 보훈서비스국 본부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고, 의료서비스의 전달과 관련하여 주정부와 협상하거나 연방정부의 일부 사회프로그램을 전달하기도 한다. 보훈서비스국은 제대군인부에서 가장 커다란 조직이고 제대군인부 예산의 대부분을 쓰고 있다.

법인서비스국(Corporate Services Branch)은 제대군인부에 편성되어 있는 재정적·인적·물질적 및 정보기술적인 자원들을 보호하고 그것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법인서비스국은 제대군인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가 잘 지켜지도록 관리하며, 1942년에 제정된 「제대군인 토지법안」(Veterans' Land Act)에 의해 경작지를 불하받아 정착한 제대군인들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법인서비스국은 제대군인부의 모든 기록문서들과 시설물 및 화상회의자료 등을 관리하고, 제대군인부의 업무추진계획과 보안 및 비상대책을 마련하며, 제대군인부에서 정부가 정한 고용평등이나 공용어 및 서비스기준 등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가를 감시한다.

공보국(Public Affairs Branch)은 캐나다 제대군인들의 업적과 희생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보존하며, 제대군인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각종 활동들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공보국은 제대군인과 그 가족들 및 일반시민들이 제대군인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제대군인부의 직원들이 제대군인부의 프로그램과 정책 변화를 잘 이해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의를 환기한다. 공보국이 관장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캐나다 기념 프로그램(Canada Remembers Program)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내 및 국제 기념식, 정보 및 연구, 그리고 지역사회활동이 포함된다.

다음에, 주요한 부서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금옹호부(Bureau of Pensions Advocates)는 상이연금의 수급자격이나 액수에 대한 제대군인부의 결정에 불복한 제대군인에 대해서 조언이나 법률적인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회계감사 및 평가부(Audit and Evaluation Division)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독자적인 검토를 통해 보훈급여의 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제대군인부 조직의 모든 부문에서 일정한 질적 수준이 실행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기획 및 대외협력부(Policy Planning and Liaison Division)는 제대군인부의 정책이 내외적으로 일관성을 지니도록 감시하며, 제대군인 단체들과 의회의 소위원회 및 연방정부의 부처들과의 연락을 담당한다. 비서실(Co-ordination Secretariat)은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 분쟁초기조정실(Office of Early Conflict Resolution)은 보훈급여와 관련하여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가능하면 제대군인부 내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방의료서비스 협력실(Federal Healthcare Partnership)은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방정부와 협력한다.

마지막으로, 「제대군인 재심 및 소청위원회」(Veterans Review and Appeal Board)는 1995년에 의회에 의해 설립된 준사법적인 기관으로서 제대군인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그 이전의 제대군인 소청위원회(Veterans Appeal Board)와 캐나다 연금위원회(Canadian Pension Commission)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위원회는 「상이연금 법안」과 「참전제대군인수당 법안」, 그리고 「제대군인 재심 및 소청위원회 법안」 등의 법률들과 관련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심사하고 평가하며, 이의제기된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3. 보훈제도의 대상자

1) 수급자격

현재 캐나다 보훈제도의 수급대상자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크게 세 집단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제대군인과 상선해군(Merchant Navy), 연합군제대군인, 그리고 전쟁 중 캐나다 군대와 밀접한 관계 하에서 지원업무를 담당했던 일부 민간인이다. 보훈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민간인으로는 상선해원, 영국에서 복무했던 소방대원, 공군의 공습준비 요원들, 민간조종사 등이다. 캐나다 보훈제도의 본격적인 발달을 초래했던 이들은 아직까지는 세 집단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크지만 곧 그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는 캐나다군(Canadian Forces: CF)에서 명예 제대한 사람과 캐나다 왕립기마경찰대(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에서 퇴직한 사람들이다. 기마경찰대에는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도 보훈급여 수급대상자가 된다. 캐나다군과 기마경찰대 제대자로 구성된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현재 가장 비중이 작지만 최근 들어 급속하게 그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세 집단 가운데 가장 비중이 커질 것이다.

셋째는 위에서 서술한 수급자격자들의 유가족이다. 여기에는 배우자(동성동거자를 포함하여 12개월 이상 동거한 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와 18세 미만의 피부양아동(재학생일 경우 25세 미만)이 포함된다. 이들은 전체 수급자 가운데 30%를 약간 넘는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일정 기간 동안은 그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수급자 현황과 추이

2005년 3월 현재 보훈급여의 수급자는 모두 약 21만 명이였다. 수급자 가운데 1차 세계대전 등의 참전제대군인이 10만 명으로 47.4%를 차지했고, 유가족은 7만2천명으로 34.4%였다. 캐나다군 제대군인은 16.4%인 3만4천명이었고, 캐나다 왕립기마경찰대 제대자는 1.8%로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10년 전인 1995년에는 보훈급여 수급자가 24만 명 정도였다. 이 가운데 약 63%인 14만 명이 참전제대군인이었고, 30%인 7만2천 명이 유가족이었다. 캐나다군 제대군인은 9%인 2만2천명에 불과했다. 1995년에서 2005년까지의 10년 동안의 수급자 추이를 보면, 전체 수급자 수가 10% 이상 줄어들었고, 특히 참전제대군인이 30% 가까이 감소하였다. 반면에, 캐나다군 제대군인은 한 배 반 이상 늘어났고 전체 보훈수급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도 7%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초래된 것은 참전제대군인 수급자의 평균연령이 매우 높아지면서 수급자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보훈수급자 가운데서 10% 이상이 80세 이상의 고령자이다. 이러한 변화 추이가 계속될 경우 2013년에는 보훈수급자의 총수가 17만85천명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참전제대군인이 28.6%, 유가족이 35.1%, 캐나다 제대군인이 33.0%, 그리고 왕립기마경찰대가 3.2%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2003년 현재 캐나다군의 제대군인 가운데서 보훈급여 수급대상자(유가족 포함)의 비율은 8.4%였으며, 이 비율은 2005년 10.6%, 2007년 11.8%, 2010년 13.4%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현재 캐나다군 제대군인 출신의 보훈급여 수급자들의 평균연령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캐나다군의 총원이 줄어들면서 제대자의 숫자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4. 보훈예산

<표 8> 캐나다 보훈예산의 추이

	1999-2000	2004-2005	2005-2006	2007-2008
총액	2,091	2,788	2,866	2,969
연금/수당/생활지원	1,218	1,698	1,724	1,782
상이연금/사망급여	1,180	n.a.	1,660	1,721
생활지원	38	n.a.	24	21
의료서비스	716	910	946	1,005
장기간병/요양원	n.a.	n.a.	357	358
의료급여	n.a.	n.a.	337	377
재택/VIP	156	n.a.	226	244
보훈기념사업	31	55	74	52
채심 및 소청위원회	9	13	13	13
보훈급여전달	117	111	109	118

(단위: 백만 달러)

주: 2004-2005년의 수치는 예상액이고, 그 이후의 수치들은 예정액임.

출처: (VAC, 2005a)

2004-2005회계연도의 캐나다 보훈예산은 약 27.9억 캐나다 달러 (2조4천억 원)였다. 이 수치는 캐나다 정부의 세출예산 2,100억 달러의 1.3%이며, 국내총생산(GDP)의 0.21%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다. 2004-2005년의 보훈예산은 5년 전에 비해 약 7억 달러(6,000억 원) 늘어났다. 캐나다 보훈예산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7-2008년에는 29.7억 달러로 2004-2005년에 비해 2억 달러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4-2005년의 보훈예산 가운데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상이연

금 등의 경제적 보상 및 지원 분야였다. 이 분야에는 모두 약 17억 달러가 지출되어 보훈예산의 61%를 차지하였다. 세부 분야별로 예산지출액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1999-2000년과 2005-2006년의 예에서 보듯이 생활지원비(소득수준이 낮은 상이군인에 대해서 지급)는 2-3%로 비중이 낮고, 대부분은 상이연금과 유족연금 및 사망보상금으로 지출되었을 것이다. 경제적 보상 및 지원 분야의 지출은 5년 전에 비해 5억 달러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보훈예산 가운데 두 번째로 비중이 큰 것은 의료서비스 분야이다. 상이제대군인에 대해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분야에는 2004-2005년에 모두 9.1억 캐나다 달러(774억 원)가 지출되었다. 2005-2006년의 예산계획안에서 보듯이 의료서비스의 예산은 장기간병과 요양원에 38%, 의료급여에 36%, 그리고 재택간병과 VIP(자립지원프로그램)에 24%씩 사용되었을 것이다. 과거에는 의료서비스의 핵심이 외래와 입원 및 수술 등의 의료처치 비용을 보조하는 의료급여에 있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수급자의 고령화와 보훈정책상의 변화로 인해서 노인들을 위한 장기간병과 재택간호, 그리고 자립생활의 보조와 지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보훈제도의 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보훈기념사업도 중요한 보훈사업의 하나이다. 보훈기념사업은 보훈관련 국내외 각종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캐나다군과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양하는 역할을 한다. 이 분야에 대한 지출은 5,500만 달러로서 보훈예산의 2%를 차지한다. 「제대군인 재심 및 소청위원회」는 제대군인부 소속기관은 아니지만 제대군인 사업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보훈예산에 같이 편성되어 있다. 그 액수는 1,300만 달러이다.

마지막으로 보훈급여전달비용은 상이연금 등의 보상금 및 지원금과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데 투입된 인력들의 인건비 및 사무비

용이다. 2004년-2005년의 보훈급여전달비용은 1억1천1백만 달러였는데, 이 액수를 보상금 및 지원금과 의료급여비용의 합산액, 즉 보훈급여총액(26억8백만 달러)으로 나누면 캐나다 보훈제도의 운영효율은 4.3%가 된다. 이 수치는 캐나다 군인연금의 0.79%나 캐나다 국민연금의 1.95%에 비해서는 높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공공부조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보훈급여의 심사와 전달이 연금에 비해서 매우 복잡하고 보다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5. 보훈관련 정부기관들

캐나다의 보훈업무는 제대군인부(VAC)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생활지원과 보상업무는 제대군인부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다른 부처들에서도 보훈이나 캐나다군의 위상 제고와 관련된 업무들을 독자적으로 혹은 제대군인부와 협력 하에서 수행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캐나다 문화부(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와 그 협력기관들은 여러 국가유적지에서 기념식이나 공연을 거행하고, 캐나다 전쟁박물관(Canadian War Museum)이나 캐나다 국립문서보관소 및 캐나다 국립도서관 등에서 수집한 캐나다 군사관련 자료와 기록들을 연구하며, 캐나다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군사관련 역사에 대한 연구를 장려한다. 또한 캐나다 문화부는 캐나다 군사관련 자료와 문서 혹은 유물들을 보존하고 전시하고, 군사관련 유물들을 보관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지역 박물관들에 대해서 재정보조금을 제공하며, 캐나다 보존 연구소(Canadian Conservation Institute)를 통해 각 지역에 남아있는 군사유품들과

유적들을 보존하고 연구하도록 장려한다. 이러한 업무들을 통해서 캐나다 문화부는 캐나다군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일반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한다.

이와 비슷하게, 캐나다 전쟁박물관은 캐나다의 군사관련 역사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캐나다 군사유품을 보존하고 전쟁이나 분쟁이 국가와 국민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캐나다 국립 문서보관소는 캐나다군에 복무한 사람들의 기록 등 캐나다의 군사역사와 관련된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사기록들을 보존하고 제공하며, 제대군인기록부에 포함된 개인들의 신상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캐나다 국립공원청(Parks Canada Agency)은 캐나다 문화부를 대신하여 국가유적지와 국가유공자 및 국가행사의 지정 및 조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국가유적지를 관리하고 지원하며, 국가유적지의 중요성을 일반시민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한다.

다음에, 정부 핵심부서들 가운데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는 캐나다 정부관리의 외국방문과 외국귀빈의 캐나다 방문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념식과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조언을 제공하고, 참전과 평화유지에 관련된 역사기록과 문서 등을 출판하며, 친선대사나 외교통상부 방문행사 등을 통해 캐나다 평화유지군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부각시킨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국방부와의 협조 하에 캐나다군과 캐나다 왕립기마경찰대가 수행한 평화유지 및 재난구조 활동들을 널리 알리고, 해외파견근무를 마친 캐나다군인에 대해서 평화유지 훈장을 수여한다.

국방부는 보훈관련 국내외 기념식과 기념행사들에 대해 인적·조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군사관련 기록들을 보관하고 일반시민이나 다른 정부부처에 그것들을 공개하며, 캐나다의 군사 유산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캐나다의 군사관련 박물관들에 대해서 조

언과 지도를 제공한다. 총독실(Office of the Governor General)은 국가의 의전상의 대표인 총독이 캐나다 기념일 행사와 보훈관련 각종 국내외 기념식 및 기념행사에 참석하도록 보좌하고, 제대군인과 현역군인에 대해 포상을 내린다. 마지막으로, 정부서비스부(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는 전쟁기념물과 국립묘지 및 사적들의 선정이나 운영 및 보존과 관련된 기술적인 조언과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특정 기념물과 기념사적지를 직접 관리하기도 한다.

6. 제대군인부 관할 법안들

- 캐나다 현역 및 제대 군인 사회복지 및 보상법안(The Canadian Forces Members and Veterans Re-establishment and Compensation Act, 2005년 제정)
- 사망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법안(Children of Deceased Veterans Education Assistance Act, 1985년 개정)
- 제대군인부 법안(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ct, 1985년 개정)
- 민간인 참전자 보상 법안(Civilian War-related Benefits Act, 1985년 개정)
- 상이연금 법안(Pension Act, 1985년 개정)
- 귀환 제대군인 보험 법안(Returned Soldiers' Insurance Act, 1920년 개정)
- 제대군인 정착지원 법안(Soldier Settlement Act, 1927년 개정)
- 전쟁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법안(Special Operators War Service Benefits Act, 1952년 개정)
- 전쟁지원 민간인 보상법안(Supervisors War Service Benefits Act, 1952년 개정)
- 제대군인 보상법안(Veterans Benefit Act, 1970년 개정)
- 제대군인 보험법안(Veterans Insurance Act, 1970년 개정)
- 제대군인 토지법안(Veterans' Land Act, 1970년 개정)
- 제대군인 재심 및 소청위원회 법안(Veterans Review and Appeal Board Act, 1994-1995년 개정)
- 참전군인 보조금지원 법안(War Service Grants Act, 1970년 개정)
- 참전제대군인 수당 법안(War Veterans Allowance Act, 1985년 개정)
- 해군 여성복무자 및 남아프리카 간호병복무자 보상법안(Women's Royal Naval Services and South African Military Nursing Service(Benefits) Act, 1952년 개정)



IV. 보훈프로그램

2006년 4월 1일에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현역 및 제대 군인 보상 법안」(The Canadian Forces Members and Veterans Re-establishment and Compensation Act)을 발효시켰다. 「제대 군인 신헌장」(New Veterans Charter)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2차 세계대전의 종전 무렵에 확립되어 60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캐나다의 제대군인 지원제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제대군인의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제대군인의 평균 연령은 36세인데, 이와 같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퇴직하게 됨으로써 제대군인들의 니즈가 보다 다양해졌고 자립생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서 「제대군인 신헌장」은 제대군인들의 개별화된 니즈를 보다 적절하게 충족시키고 제대군인들의 창업이나 구직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캐나다의 보훈제도를 재편성하였다.

「제대군인 신헌장」이 도입된 또 다른 배경으로는 노령화의 진전을 들 수 있다. 다른 선진산업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평균여명도 지속적으로 높아져왔으며, 이에 따라서 상이연금과 의료서비스 등 보훈제도의 핵심프로그램들에 대한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인구노령화가 초래하는 이러한 재정적인 압박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대군인 신헌장」은 캐나다 보훈제도의 핵심인 상이연금을 폐지하고, 그에 대신하여 소득상실급여와 영구장애수당 및 상이보상금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영구장애수당은 과거의 상이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의 형태로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제공된다. 반면에, 소득상실급여는 재활프로그램이나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이군인이 직장을 얻기 전까지만 제공되며, 상이보상금은 거액의 일시금

의 형태로 지급되어 상이제대군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이, 새로운 보훈제도는 한편으로는 상이제대군인의 경제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금의 비중을 크게 줄이는 쪽으로 개편된 것이다.

「제대군인 신헌장」은 새롭게 제대군인에 편입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며, 기존의 제대군인들은 이제까지 받아왔던 모든 급여와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 중 일부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제대군인 신헌장」의 도입으로 인해서 보훈예산이나 급여액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제대군인 신헌장」은 제대군인의 니즈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일부 프로그램들을 줄이거나 없애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보훈예산과 급여액은 과거와 같은 수준(단, 물가인상과 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예산 증가분은 반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군인 신헌장」은 대략적인 지침과 세부 프로그램들에 대한 포괄적인 소개를 제공하고만 있을 뿐 아직까지 각 프로그램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특히 보훈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이제대군인에 대한 보상금액이나 보상금수준의 결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제대군인 신헌장」에 나와 있는 보훈프로그램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소개하겠다. 이와 함께, 「제대군인 신헌장」에서 아직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이제대군인에 대한 보상금수준을 기존의 상이연금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서술하겠다.

1. 재활프로그램(Rehabilitation)

재활프로그램은 장애를 입은 상이제대군인들이 정상적인 민간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가족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상이제대군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전문가들과 재활시설들의 협조를 통해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자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제대한 군인, 주로 복무와 관련하여 육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문제를 갖게 된 제대군인, 상이제대군인의 배우자, 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이며, 재활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서비스가 있다.

첫째, 의료서비스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전문 인력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상이제대군인의 육체적 및 정신적 기능을 가능한 한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 핵심적인 서비스로는 통증관리, 마사지, 물리치료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심리/사회서비스는 상담을 통해 제대군인들이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셋째, 직업재활서비스는 군대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민간직장을 찾도록 도우며, 구직지원프로그램(Vocational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새로운 직업에 적절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활프로그램은 「제대군인 신헌장」의 도입과 함께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보훈프로그램이다. 과거에도 의료서비스를 통해 재활 프로그램들이 부분적으로 제공되기는 했지만, 「제대군인 신헌장」에서는 그것을 보훈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독립시켰고 다른 보훈급여들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이 재활프로그램이 강조되는 것은 「제대군인 신헌장」 하에서는 보훈제도가 과거의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제공 중심의 수동적인 지원체제로부터 상이제대군인의 자립과 자조를 촉진하는 능동적인 지원체제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재정지원프로그램(Financial Benefits Programs)

재정지원프로그램은 복무와 관련하여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들이 건전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상금과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네 가지의 하위 프로그램들이 있다.

1) 소득상실급여(Earning Loss Benefits)

소득상실급여는 복무와 관련하여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이 적절한 직업을 찾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제공되며 급여수준은 제대 전 봉급총액의 75% 이상이다. 수급대상자는 재활프로그램이나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제대군인, 혹은 복무와 관련하여 상해 혹은 질병을 입어 사망했거나 복무로 인해서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현역 혹은 제대군인의 유가족이다.

과거에는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의 생활보조금으로 상이연금만이 제공되었다. 「제대군인 신헌장」의 도입 이후에는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서 소득상실급여와 뒤에서 서술하는 영구장애수당 및 상이보상금이 제공된다. 말하자면, 기존의 상이연금이 소득상실급여, 영구장애수당, 상이보상금의 세 가지 급여로 나뉜 것이다.

소득상실급여액은 수급자의 장애의 정도와 제대 전 봉급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급자가 다른 보훈급여나 군인연금 혹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이 급여는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거나 소득감소를 겪

는 제대군인의 소득상실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정년인 65세가 지났거나 일정 소득 이상을 제공하는 적절한 직업을 가진 제대군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과거의 상이연금의 사망 시까지 제공된다는 점에서 「제대군인신헌장」의 도입으로 인해서 상이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상이보상금이 새롭게 설치된 데다가, 새롭게 도입된 영구장애수당은 사망 시까지 지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뒤에 서술하듯이 캐나다군 소득보조급여와 같은 생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2) 영구장애수당(Permanent Impairment Allowance)

영구장애수당은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입어서 민간영역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기 어려운 상이제대군인에게 제공된다. 수급대상자는 심각하고 영구적인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었고, 본인의 재활프로그램 계획이 제대군인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그러한 손상과 관련하여 상이보상금을 받은 제대군인이다.

영구장애수당은 소득상실급여와 동시에 수급 받을 수 있다. 소득상실급여는 적절한 직업을 갖거나 65세가 넘은 경우 제공되지 않는 반면에, 영구장애수당은 그러한 조건과 관계없이 수급자가 생존하는 한 계속 제공된다. 현재 영구장애수당의 급여수준과 급여액의 결정방법, 그리고 영구장애수당과 소득상실급여의 급여액 조정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3) 보충퇴직급여(Supplementary Retirement Benefits)

이 급여는 소득상실급여를 받고 있는 제대군인 가운데서 65세에 도달하였거나 적절한 직업을 갖게 되어서 더 이상 소득상실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사람들, 그리고 소득상실급여를 받았던 제대군인의 유가족에게 일시금의 형태로 제공된다. 보충퇴직급여는 소득상실급여의 중단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이며, 아직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4) 캐나다군 소득보조급여(Canadian Forces Income Support)

이 급여는 복무와 관련하여 장애를 입었지만 65세를 넘었거나 근로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소득상실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제대군인과 재활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저임금의 직업을 갖게 된 제대군인에게 비과세로 매월 제공된다. 수급대상자는 재활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가구소득이 기본적인 니즈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아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며 일정소득을 보장하는 적절한 직업을 아직 찾지 못한 캐나다 거주 제대군인, 혹은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는 유가족이다. 캐나다군 소득보조급여는 사회복지제도의 소득보충급여(GIS)와 비슷하지만, 후자가 65세 이상의 저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서 전자는 65세 미만에게도 제공된다는 차이가 있다.

참고로, 과거에는 캐나다군 소득보조급여와 비슷한 것으로 참전 제대군인 수당(War Veterans Allowance)이 있었다. 이 수당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 및 한국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제대군인에게만 제공되며, 급여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가족에서의 지위,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된다. 이 수당의 급여액은 법으로 정해진 생활비(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에서 신청인의 소득을 뺀 만큼

의 액수이며, 신청인의 소득 가운데서 연 2,900달러(독신인 경우)에서 4,200달러(배우자와 동거할 경우)의 근로소득과 140 달러의 이자소득은 기준소득에서 공제된다.

3. 상이보상금(Disability Award)

상이보상금은 복무와 관련하여 장애를 입은 상이제대군인에 대해 제공되며, 금액은 장애정도에 따라 최고 25만 달러(2억1천만 원)로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장애보상금에 비해 조금 높다. 「제대군인 신헌장」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이 일시금은 소득상실급여 등 보훈제도상의 다른 급여의 수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제공된다.

과거에는 상이제대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만이 제공되었다. 제대군인부에 따르면, 소득상실급여가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의 소득상실을 보충해 주는 경제적인 의미를 갖는 데 반해서, 상이보상금은 장애로 인한 고통과 육체적 기능상실 및 영구장애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보상해 준다는 경제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보상금은 거액의 일시금이기 때문에 자영업의 창업자금이나 민영금융기관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상이제대군인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시킬 뿐 아니라 상이제대군인의 자립과 자조를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상이보상금의 수급대상자는 복무와 관련된 상해 혹은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현역 혹은 제대군인, 복무로 인해 기존의 상해와 질병이 악화된 현역 혹은 제대군인, 그리고 상이보상금의 수급자격이 있는 현역 혹은 제대군인의 유가족이다. 이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서 상이연금을 받고 있는 제대군인은 상이보상금을 받

을 수 없다. 다만, 과거 복무와 관련된 장애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대군인이 상이보상금을 받은 바로 그 장애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은 25만 달러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이보상금을 뺀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4. 기타 보상금

1) 사망급여 (Death Benefit)

사망급여는 비과세 일시금으로 그 액수는 25만 달러이다. 사망급여는 복무 중 사망했거나 복무 중 상해를 당하여 30일 이내에 사망한 현역 군인의 유가족(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 혹은 자녀)에게 제공된다. 사망급여는 다른 보훈프로그램들에서 받는 급여와는 관계없이 지급되지만, 사망급여와 상이보상금은 중복 수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 피복수당 (Clothing Allowance)

피복수당은 상이보상금을 받는 현역 혹은 제대군인 가운데서 신체상의 이유로 인해서 기성복을 고쳐 입어야 하거나 특수 제작된 의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매달 제공된다. 현재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3) 억류급여 (Detention Benefit)

억류급여는 복무 중에 적군, 대치 병력, 혹은 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30일 이상 구금되었거나 포로상태에서 탈출한 현역 혹은 제대군인에게 제공된다. 「제대군인 신헌장」과 함께 도입된 이 급여는 억류기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일시금의 형태를 지닌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다.

억류급여와 비슷한 것으로 과거에는 전쟁포로 보상금(Prisoner of War Compensation)이 있었다. 이 보상금은 연금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지급되었다. 억류기간이 30일에서 88일인 경우 기본연금(가족에 대한 부가급여를 제외하고 제대군인 본인분의 상이연금액)의 5%, 89일에서 545일일 경우 기본연금의 10%, 546일에서 910일일 경우 기본연금의 15%, 911일에서 1,275일일 경우 기본연금의 30%, 1,276일에서 1,641일일 경우 기본연금의 35%, 그리고 1,643일 이상일 경우 기본연금의 40%이다. 전쟁포로 보상금은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부가급여도 제공한다.

4) 화학전 실험참가자 보상금(Chemical Warfare Agent Testing Recognition Program)

이 제도는 2004년 2월에 공포된 것으로서 194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캐나다의 화학전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제대군인에 대해서 보상금을 제공한다.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일인당 24,000달러(2,040만원)이며, 총예산은 5천만 달러로 책정되었다. 이

미 상이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화학전 실험에 참가했던 제대군인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격자가 사망했을 때는 유가족에게 지급될 수 있다.

5. 의료서비스(Health Care)

보훈제도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는 의료급여, 제대군인 자립프로그램, 요양시설입소의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며, 「제대군인 신헌장」의 선포와 함께 단체의료보험이 추가되었다. 의료서비스는 치과서비스를 빼면 이용자부담을 부과하지 않지만,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군인부에 의해 빈도와 금액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1) 의료급여(Health Care Benefits)

의료급여는 외래 및 입원, 수술, 치과, 처방전, 의료기기 지급, 청각 및 시각 보조, 자립생활 지원 등의 14개 종류를 포함하며, 상이보상금(과거에는 상이연금)을 받은 제대군인에 대해서만 제공된다. 의료급여는 캐나다 의료서비스제도에서 지원하지 않거나 이용자부담을 부과하는 의료항목에 대해 비용을 지불한다.

(1) 일상생활지원(Aids for Daily Living: ADL)

상이제대군인이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도

구나 보조기구 등을 제공하거나 주거공간을 편리하게 변경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서, 지팡이와 휠체어 같은 보행보조기구들, 옷을 입고 벗거나 식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구들, 침대의 보조테이블과 같은 침실 보조기구들, 그리고 장애인에 적합한 변기나 욕조의 설치 등이 있다.

(2) 앰블런스 및 이동서비스(Ambulance/Medical Travel Services)

위급상황이나 의료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앰블런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병원 등 의료시설을 방문하기 위해 택시 등의 교통시설을 이용하였을 때 그 비용을 환불해 주는 서비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군인부의 의료담당부서(VAC-NCCC)에서 교통수단을 보내주기도 한다.

(3) 청력보조서비스(Audio/Hearing Services)

청각을 손상당한 환자에 대해 청력보조 기구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아날로그 청력보조기, 디지털 청력보조기, 확장전화기, 보청기 등을 들 수 있다.

(4) 치과서비스(Dental Services)

매년 기본적인 치과 처치들(검사, 불소처치, 스케일링, 충치치료)과 매 7년마다 일반적인 틀니를 제공한다. 단, 연간 800 달러를 초과하는 기본적인 치과 처치와 크라운이나 브릿지 등 특수한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사전 인준이 필요하다. 다른 항목과는 달리 보훈제도의 의료급여는 치과 서비스 비용의 90%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며 나머지 10%는 이용자부담이다. 그리고 인공치아이식(임

플란트), 정밀하게 제작된 특수틀니, 잇몸 수술 등은 의료급여의 급여대상이 아니다.

(5) 병원서비스(Hospital Services)

각종 형태의 병원에서 제공된 치료들에 대한 급여를 제공한다.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행해진 외래와 입원 치료 모두를 급여대상으로 하며, 일부 급성 질환의 치료비용과 특별한 비용을 부과하는 민영 병실의 입원비용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6) 재택의료서비스(Medical Services)

재택환자들에 대해서 자격증을 가진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급여를 제공한다. 의료검사와 처치 및 보고 비용들이 모두 포함되며, 상이보상금(과거에는 상이연금)의 수급자가 자신의 장애부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의료서비스를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7) 의료보조기구(Medical Supplies)

병원 이외의 곳에서 개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료보조 및 외과 기구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붕대, 요실금기구 등이 포함된다.

(8) 간호서비스(Nursing Services)

재택환자에 대해서 간호사에 의한 투약지도와 의료기구 및 건강용품 사용 상담, 붕대 관리, 그리고 간호사나 자격 있는 간호조무사에 의한 발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루에 두 시간을 한도로 한다.

(9) 산소 요법(Oxygen Therapy)

재택환자들에 대해서 산소와 산소호흡기 및 부속 장비들을 제공하고 기타 호흡장비들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10) 처방약품(Prescription Drugs)

환자가 필요한 약품들과 의료보조기구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여기에는 기본급여와 특별인준급여가 있다. 기본급여(standard benefits)에는 의사에 의해 처방된 약품과 다양한 비처방 약품들, 그리고 제대군인부에 의해 일반적인 요법으로 인정되는 의료보조기구들이 포함된다. 특별승인급여(special authorization benefits)는 사전 승인을 통해 덜 일반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요법들 가운데 제대군인부가 인정한 것들을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11) 보철 및 교정(Prosthetics and Orthotics)

손상을 입은 신체부위를 지지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형태의 보철기구와 교정기구들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여기에는 의치 등의 보철기구들과 치아교정틀 등의 교정기구들, 특수제작신발, 필요한 보조기구 등이 포함된다.

(12) 대체의료서비스(Related Health Services)

병원이나 의사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대신하는 대체의료요법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대체의료요법

들은 주정부나 제대군인부 등에 의해 승인된 자격 있는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직업요업, 물리요법 (physiotherapy), 마사지요법, 침술, 심리상담 등이 포함된다.

(13) 특수장비(Special Equipment)

재택환자의 치료와 간호를 위해 필요한 특수장비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여기에는 병상, 엘리베이터, 주택개조, 휠체어, 운전보조기구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인 침대나 고급형의 특수침대 등은 제외된다.

(14) 시력보호(Vision Care)

손상된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안경테나 렌즈 및 필요한 안과용 보조장치를 제공하고 검안을 받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2) 제대군인 자립프로그램(Veterans Independence Program: VIP)

제대군인 자립프로그램은 VIP라고 불리며, 1981년 4월에 도입된 프로그램으로서 상이제대군인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급대상자는 상이보상금(혹은 상이연금)을 받는 제대군인, 중도 이상의 장애를 입은 참전제대군인, 소득수준이 낮은 참전제대군인, 1981년 이후 사망하였고 VIP 서비스를 수급한 제대군인의 일차적인 간병인(배우자나 자식) 등이다. VIP 서비스를 신청하면 제대군인부 지부의 직원이 신청자를 면담하여 VIP 서비스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VIP의 수급여부는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달려 있으며

비슷한 서비스가 공공프로그램(연방정부, 주정부 및 시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서 제공될 경우에는 VIP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VI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는 주택주변관리(Grounds Maintenance)로서 마당과 인접 도로 및 지붕의 눈을 치우거나 잔디를 깎는 것 등이 포함된다. 단, 마당에 나무를 심거나 꽃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비료를 주는 것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는 가사서비스(Housekeeping)로서 식사준비, 청소, 세탁, 다림질, 심부름 등 수급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일들을 대행한다. 셋째는 개인서비스(Personal Care)로서 식사, 세수, 목욕, 착·탈의, 배변, 보철기구 착용, 걷기 등의 활동을 수급자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넷째는 주택개조서비스(Home Adaptations)로서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화장실, 부엌, 복도 등을 수급자의 활동과 휴식에 편리하도록 고치는 것이다. 다섯째는 식사제공서비스(Nutrition Services)로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사를 배달해 주거나 지역 내의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제공한다. 여섯째는 건강 및 지원서비스(Health and Support Services)로서 건강전문가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처방해준다.

이외에도, 이동건강서비스(Ambulatory Health Care)는 주간보호시설과 같이 자택 이외의 곳에서 제공되는 건강서비스 및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러한 시설에 통근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를 제공한다. 수급자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외출을 할 때에도 교통비용이 지불된다.

3) 요양시설입소(Nursing Home Care)

복무와 관련하여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들은 대부분 일정 기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받은 다음 퇴원하거나 VIP를 이용하여 자택에서 생활을 한다. 반면에, 일부 제대군인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VIP를 이용하더라도 자립생활이 불가능하다. 요양시설입소 프로그램은 일정한 자격심사를 거쳐 그러한 상이제대군인들이 요양원 등의 장기간병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한다.

캐나다의 의료보장제도에서도 요양시설입소자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제공하지만, 전체비용 가운데서 22% 정도는 여전히 이용자 부담이다. 지역에 따라 연간 만 달러에 가까운 비용을 입소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요양시설의 입소자들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 년 동안 입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정도의 비용은 입소자에게 막대한 부담이 된다. 보훈제도의 요양시설입소 프로그램은 이용자부담을 지불해줌으로써 자격 있는 상이제대군인의 요양시설입소를 보장한다.

요양시설입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의료급여나 VIP에 비해서 작다. 그렇지만, 요양시설의 이용자부담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대표적인 세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서 요양시설입소 프로그램의 비중이 가장 크다. 3장 4절의 <표 8>에서 보듯이, 2005-2006년의 보훈제도의 의료서비스 예산 가운데서 요양시설이 3.6억 달러인데 반해서 의료급여는 3.4억 달러, 그리고 VIP는 2.3억 달러였던 것이다.

4) 단체의료보험

캐나다의 의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에게 비용부담을 지우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처방약품, 특수

료장비, 특진 등의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용자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단체의료보험은 이러한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이용자부담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제대군인 신헌장」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수급대상자는 복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재활을 필요로 하는 제대군인, 혹은 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현역 혹은 제대군인의 유가족이며, 수급대상자들은 모두 지역의료보험의 공공서비스 의료보험(Public Service Health Care Plan, PSHCP)의 가입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별도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PSHCP는 단체의료보험과 유사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수급대상자들은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년 일정액의 공제액을 납부한다. 대부분의 이용자부담 비용 가운데 20%는 본인이 책임지고 나머지 80%는 단체의료보험에서 부담한다. 캐나다군 소득보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제대군인부가 보험료와 공제액 및 본인일부 부담금을 모두 지불한다.

5) 기타 의료지원

제대군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군복무에서 기인하는 지속적인 심리적인 부적응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군복무 관련 스트레스상해(operational stress injury: OSI)라고 불리는 이러한 상태에는 불안장애,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의학적인 질병에서부터 그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방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인 문제들이 포함된다.

제대군인부는 OSI 클리닉을 설치하여 OSI를 경험하고 있는 현역 및 제대군인들과 그들의 가족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제대군인부는 국방부와의 협조 하에 OSI 사회지원프로그램(OSI Social

Support: OSISS)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OSI를 겪고 있는 제대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해 집단상담의 기회를 제공한다.

6) 세인트 앤 병원(St. Anne Hospital)

제대군인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주로 상이제대군인들이 캐나다의 의료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때 드는 이용자부담을 보조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세인트 앤 병원은 제대군인부가 직영했던 병원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병원으로서 장기입원을 요하는 제대군인들과 외래 제대군인들에 대해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세인트 앤 병원은 다양한 형태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과 입원환자들을 위한 수공예 기술습득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몬트리올 근교에 1971년에 새롭게 지어진 빌딩에 들어있는 세인트 앤 병원에는 현재 파트타임을 포함하여 1,1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외에 1,000 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입원환자는 모두 475명이며, 환자들은 평균연령이 84.3세로 주로 2차 세계대전의 참전자들이다. 세인트 앤 병원은 2003년에서 2007년의 5개년 동안 모두 6,800만 달러의 비용을 늘여서 공간 확대 및 개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6. 구직지원프로그램(Job Placement Program)

구직지원프로그램은 제대군인이 민간영역에서 적절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

은 세 가지의 핵심적인 서비스에 초점을 둔다. 첫째는 직업탐색 훈련(job-searching training)으로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민간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발굴하며, 면접에 대비한 실전 연습을 시키고, 자영업 창업을 위한 조언 및 훈련을 제공한다. 둘째는 경력상담(career counselling)으로서 민간영역에서 일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제대군인의 기술 및 경험 수준을 평가하며, 이력서를 완성하도록 지원한다. 셋째는 구직보조(job-finding assistance)로서 구직광고를 내거나 구인기업들을 검색하여 알려주고 기업들과의 면접을 주선한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대상자는 정규군의 현역과 제대군인, 예비군의 제대군인(단, 특수임무나 비상근무에 복무하여 실직 혹은 임금 삭감을 겪은 사람에 한함), 예비군의 현역 가운데서 지난 24개월 동안 적어도 21개월 간 풀타임으로 복무한 사람, 캐나다군 소득보조급여를 받는 제대군인, 그리고 자격을 갖춘 현역 혹은 제대군인의 유가족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제대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단, 캐나다군 소득보조급여를 받는 경우는 예외), 불명예 제대자는 참여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제대군인은 이 프로그램을 단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구직지원 프로그램 이외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상이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첫째, 경력이전 지원 프로그램(Transition Assistance Program: TAP)은 의학적인 문제로 제대한 군인이(복무 중 부상을 입었지만 의학적인 문제로 제대하지는 않은 군인 포함)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용주들이 그러한 제대군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TAP는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직업에 요구되는 교육수준을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훈련을 제공하고, 훈련기간 동안 최고 6개월의 봉급을 지불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직업현장적응훈련(on-the-job training) 비용과 구직지원자의 이사비용을 부담함으

로써 고용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다음에, 현역군인 직업재활프로그램(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for Serving Members: VRPSM)은 의료적인 문제로 제대할 예정인 현역군인이 사회에서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참가자들은 직업훈련, 대학 및 직업학교교육, 직업현장적응훈련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VRPSM의 참여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마지막으로, 상이제대군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공공분야의 직업선택 우선권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 12월 31일부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때문에 제대한 군인은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보유했을 경우 연방 공공서비스 상이군인 우선고용 프로그램(Federal Public Service Priority Hiring Program for Disabled Military Members)에 의해 연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혜는 제대한 날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또한, 2001년 6월부터 시행된 국방부의 상이군인 고용평등 프로그램(Employment Equity Program for Disabled Military)은 국방부에 신규 충원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험지역에서 복무하다가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에게 채용우선권을 보장하며,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7. 가족지원프로그램(Family Support)

과거의 보훈제도는 상이연금과 의료서비스 등 상이제대군인 본인에 대한 급여의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반해서, 「제대군인 신헌장」은 가족지원 프로그램들을 대폭 강화하였다. 제대군인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크게 생활지원프로

그램과 장애지원프로그램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생활지원프로그램

가족대상의 의료서비스(health care)는 「제대군인 신헌장」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상이제대군인의 가족들도 상이제대군인과 마찬가지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음에, 사례관리(case management)는 제대군인 가족이 지닌 다양한 니즈와 문제들에 맞추어 개별 가족에게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 제대군인 가족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이다. 주로 개별 가족이 직면하였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전문가 및 조력자를 찾아 개별 가족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비슷하게, 가족상담(family counselling)은 제대군인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내의 생활상 및 심리상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담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제대군인의 배우자,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제대군인의 배우자는 상이제대군인과 마찬가지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배우자들은 제공되는 재활서비스들(의료서비스, 심리/사회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가운데서 주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으며, 여기에는 진학(대학이나 직업학교), 직업훈련, 구직지원 등이 포함된다. 재활프로그램은 이와 관련된 비용들과 아동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을 부담한다.

자녀교육지원프로그램(Education Assistance Program: EAP)은 「사망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법안」(The Children of Deceased Veteran Education Assistance Act)에 따라서 유가족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2006년 기준으로 연간 약 6,700달러의 학자금을 제공한다. 이 액수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몇 년 간격으로 조정되며 최대 4년간 지급된다. 수급자격은 복무와 관련하여 사망했거나 사망 당시 중도 이상의 장애로 상이연금을 받고 있었던 제대군인의 30세 이하의 자녀로서 캐나다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공립학교의 경우 고등학교까지가 무상교육이며, 대부분의 대학들이 공립으로서 지역에 따라 연간 4,000달러에서 6,000달러 정도의 등록금을 받는다. 자녀교육지원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유가족 자녀들은 교육비 부담 없이 대학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

2) 장례관련프로그램

복무 중 사망한 현역군인과 상이보상금이나 소득상실급여 혹은 캐나다군 소득보조급여를 받다가 사망한 제대군인 가운데서 품위 있는 장례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돈을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산심사(means test)를 통해서 장례비용을 제공한다. 자산심사 시에 배우자에게 남긴 유산 가운데 12,015달러 분량의 자산, 유자녀 일인당 700달러어치의 자산,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일상적인 가구 등 포함)과 가족이 이용하는 자동차, 사망한 달 사망자에게 지급된 통상적인 소득액(노령연금, 장애연금 등)과 같은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복무 중 사망했거나 복무와 관련하여 입은 장애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현역 및 제대군인의 경우 자산심사 없이 장례비용이 지급되었지만, 「제대군인 신현장」의 도입과 함께 이들에 대해서도 자산심사를 거쳐 장례비용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다.

참전제대군인들과 캐나다군의 정규군과 예비군에서 명예 제대

한 사람들은 사망 시 수도 오타와에 있는 국립묘지(National Military Cemetery: NMC)에 묻힐 수 있다. 묘지에는 본인의 가장 가까운 가족 중 한 명이 같이 묻힐 수 있다. 모두 12,000~13,000기의 묘소를 수용할 수 있는 NMC는 국방부에 의해 운영되며 2001년에 설립되었다. 장례와 매장에 필요한 비용은 국방부와 가족이 분담하며, 국방부의 지원금액은 사망한 장소에 따라서 4,100~4,675 달러와 기타 비용이다. 가족이 원할 경우 장교를 포함한 4명의 현역군인이 매장행사에 의장대로 참여한다.

8. 상이연금(Disability Pension)

1) 개요

과거에는 상이제대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이 제공되었던 데 반해서, 「제대군인 신헌장」에서는 소득상실급여, 영구장애수당, 상이보상금이 지급된다. 현재 소득상실급여와 영구장애수당의 급여 수준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존의 상이연금을 기준으로 하여 상이제대군인이 보상금과 생활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의 수준에 대해 서술하겠다. 대체적으로 볼 때, 과거의 상이연금의 급여액이 「제대군인 신헌장」 도입 이후에 소득상실급여와 영구장애수당 및 상이보상금으로 분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 보훈제도에서 제공하는 상이연금은 1919년에 시행된 「상이연금 법안」(Pension Act)에 기초하고 있으며, 복무와 관련하여 상해나 질병을 얻어 영구장애를 입었거나 복무로 인해 기존의 상해나 질병이 더욱 악화되어 영구장애를 입은 현역 및 제대

군인, 혹은 전쟁 시에 군부대의 지원업무에 깊숙하게 종사했던 민간인에게 지급된다.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보훈급여들은 상이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제공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기능을 재활프로그램과 상이보상금이 대신하고 있다.

2) 급여

상이연금은 상이제대군인 본인에게 제공되는 기본급여와 상이제대군인의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부양가족급여로 구성되며, 매해 1월 1일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만큼 조정된다. 상이연금의 급여액은 전액 면세대상이다. 상이연금의 수급 여부 및 급여수준은 복무와 관련되어 입은 장애의 정도에만 달려있으며, 수급자의 기타 소득, 연령, 계급 혹은 재정적인 상황 등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상이연금의 급여액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우선, 연금수급권(pension entitlement)을 결정한다. 연금수급권은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군복무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에 의해 결정되며, 그 결정은 2006년 4월 현재 37개로 이루어진 연금수급권 가이드라인(Entitlement Eligibility Guidelines)에 따른다. 연금수급권은 군복무가 장애의 발생에 대해 최소한의 영향만을 미쳤을 경우에는 1/5를, 그리고 장애가 완전히 군복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5/5를 인정한다. 현재 상이연금을 받고 있는 부위의 장애로 인해서 다른 장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또 다른 연금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에, 상이등급(assessment of disability)을 결정한다. 상이등급은 제대군인부 의사의 검진을 거쳐 수 백 페이지에 달하는 상이등급표(Table of Disabilities)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상이등급표는 육체적 장애를 측정하는 「의학적 손상등급표」와 생활상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삶의 질 등급표」로 구성되며, 신청자의 상이등급은 그 두 등급표에서 얻는 점수의 합계이다. 합계가 100%를 넘는 경우에는 100%로 한다. 상이등급표에 대해서는 마지막 장의 첫째 절에 보다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어서, 연금급여율(rate of pension)을 평가한다. 연금급여율은 연금수급권(1/5~5/5)에 상이등급(1%~100%)을 곱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연금수급권이 3/5이고 장애등급이 25%이면 연금급여율은 15%가 된다. 그리고 한 개인에게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급여율을 계산하여 합산한 것을 그 개인의 연금급여율로 한다. 개인의 통산 연금급여율이 1~4%일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제공하며, 5% 이상일 경우에는 연금으로 제공한다. 결정된 연금급여율(기본급여) 이외에 배우자와 18세 미만(재학 중일 경우에는 25세까지)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연금급여율(부양가족급여)이 추가로 제공된다.

<표 9> 상이연금 월급여액 (2006년 기준)

연금급여율	기본급여액	배우자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이후
5%	\$108.57	\$27.14	\$14.11	\$10.32	\$8.14
100%	\$2,171.32	\$542.83	\$282.27	\$206.28	\$162.85

출처: (VAC, 2006c)

<표 9>에는 2006년의 상이연금 월 급여액이 제시되어 있다. 연금급여수준이 가장 낮은 연금급여율 5%의 경우 상이제대군인 본인은 108.57달러, 배우자는 27.14달러,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경우 첫째는 14.11달러, 둘째는 10.32달러, 셋째 이후의 자녀는 일인당 8.14달러를 지급받는다. 4인 가족이라면 상이연금 총액은 약 160달러(약 136,000원)가 된다. 연금급여수준이 가장 높은 연금급여율

100%의 경우에는 상이제대군인 본인에 대해서 2,171.32달러, 배우자에 대해서는 542.83달러,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282.27달러,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206.28달러, 그리고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해서는 일인당 162.85달러가 지급된다. 따라서 4인 가족의 경우 상이연금 총액은 약 3,203달러(약 272만원)가 된다.

<표 9>에 나와 있는 것 이외의 연금급여율의 상이연금 급여액은 연금급여율 5% 당 위의 표 둘째 줄에 나와 있는 액수만큼 늘어난다. 즉, 연금급여율 10%의 급여액은 연금급여율 5%의 급여액의 두 배, 그리고 연금급여율 20%의 급여액은 연금급여율 5%의 급여액의 네 배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연금급여율 50%인 경우에는 기본급여액 1,085.7달러(108.57달러 X 10), 배우자 271.4달러(27.14달러 X 10), 첫째 자녀 141.1달러(14.11달러 X 10), 둘째 자녀 103.2달러(10.32달러 X 10)가 된다. <표 9>에서 보듯이 연금급여율 100%의 급여액들은 연금급여율 5%의 급여액들을 20배한 수치이다.

상이연금을 받는 제대군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동일액수의 상이연금이 일 년 동안 유가족에게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족연금으로 대체된다. 만일 상이제대군인의 통산 연금급여율이 48% 이상이라면 유가족은 일률적으로 완전유족연금을 받고, 연금급여율이 5%에서 47%라면 비례유족연금을 받는다. 완전유족연금은 연금급여율 100%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상이연금 기본급여액의 75%에 해당하며, 비례유족연금은 상이제대군인의 연금급여율에 따라 지급했던 상이연금 기본급여액의 50%에 해당한다.

3) 상이연금과 군인연금/국민연금의 급여액 조정

복무와 관련하여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은 보훈제도상의 상이연

금 이외에도 캐나다 군인연금에서 제공하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연금은 독립적인 것으로서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군인연금의 장애연금을 받았다고 해서 보훈제도의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그 급여액이 줄어들지 않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것은 군인연금의 장애연금은 수급자가 근무 중 납부한 기여금에 기초해서 제공되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닌 것이고, 보훈제도상의 상이연금은 개인의 희생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금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캐나다 국민연금에서도 장애를 입은 캐나다 시민들에 대해서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직업을 가진 모든 캐나다 시민들에게 강제 적용되기 때문에 캐나다 군인도 가입 대상이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장애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보훈제도의 상이연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전자는 수급자의 기여금에 기초한 사회보험이고 후자는 수급자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장의 <부록>에 서술되어 있는 대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군인연금의 장애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전자를 받게 되면 그 액수만큼 후자의 급여액이 삭감되는 것이다.

9. 제대사유별 보훈급여 및 기타 급여 수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보훈제도는 장애를 입었거나 사망한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이제까지 서술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제대군인신현장」 하에서는 제대사유별로 어떤 보훈급여와 군인연금급여 및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되는지를 <표 10>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해 보겠다.

1) 상이제대군인

상이제대군인과 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훈제도상의 보상금 및 지원금으로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상이보상금(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며, 최고 25만 달러), 연금으로 지급되는 영구장애급여(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 적절한 직업을 구할 때까지 65세까지 지급되는 일시적인 성격의 소득상실급여(제대 전 봉급총액의 최소한 75%), 65세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보충급여가 있다. 이것들을 합산하면 과거의 상이연금의 급여액과 같을 것이기 때문에 「제대군인 신헌장」 하에서의 상이제대군인에 대한 보상금과 지원금의 수준은 제대군인 본인의 상이등급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외에도, 상이제대군인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소득심사를 거쳐 캐나다군 소득보조급여가 제공되고, 필요할 경우 피복수당이 지급된다.

이상과 같은 보상금이나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상이제대군인이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보훈제도에서는 재활서비스를 통해 상이제대군인의 신체적 재활과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제대군인 자립프로그램을 통해 자택에서의 독립생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구직지원프로그램, 경력이전 지원 프로그램, 현역군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이제대군인이 민간영역에서 적절한 직업을 찾도록 도우며, 연방 공공서비스 상이군인 우선고용 프로그램과 상이군인 고용평등 프로그램을 통해 상이제대군인이 공공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상이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상이제대군인이 참여할 수 없을 때는 배우자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

이제대군인은 단체의료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이용자부담을 거의 면제받으며, 필요한 경우 요양원 등의 장기간병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상이제대군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상이제대군인과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함께 사례관리와 가족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군복무 관련 스트레스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조치 혹은 상담서비스도 제공된다. 상이제대군인이 사망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장례비용을 지원받으며, 국방부의 지원 하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대로 보훈제도상의 급여들은 상이제대군인의 생활을 거의 모든 측면으로부터 지지해 준다. 그렇지만, 보훈제도는 상이제대군인과 그 가족이 사회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상이제대군인과 그 가족은 군인연금과 사회보장제도로부터도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우선, 군인연금으로부터는 복무 1년 당 7일분의 급여를 제공하는 퇴직수당과 복무 10년 이상인 상이군인에게 완전연금으로 지급되는 퇴직연금(장애연금)이 주어진다. 복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기여금과 그에 대한 수익금이 포함된 퇴직일시금을 받는다. 또한, 손과 발 등의 신체부위가 사고로 인해 절단되었거나 시력이나 청력을 잃었을 때에는 부가보험인 상해보험플랜을 통해 최고 25만 달러의 장애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급여들은 보훈 급여들의 수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제공된다.

다음에, 상이제대군인은 캐나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인연금의 장애연금 제공기준이 10년 이상 복무인데 반해서 캐나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제공기준은 4년 이상의 기여금 납입이므로, 복무기간이 4년 이상 10년 미만인 상이제대군인은 캐나다 군인연금으로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복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상이제대군인도 캐나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군인연금의 퇴직연금급여

액이 그만큼 삭감된다. 마지막으로, 상이제대군인이 65세 이상이 되면 사회보장제도의 노령보장연금(OAS)을 수급할 수 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소득보충급여(GIS)를 지급받을 수 있다.

2) 사망제대군인

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는 상이제대군인에 대한 보훈급여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하다. 우선, 25만 달러의 사망급여가 주어지고, 배우자가 적절한 직업을 갖지 못했을 때는 소득상실급여가 사망군인의 65세 생일까지 지급되며, 65세 생일 이후에는 퇴직보충급여가 제공된다. 유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소득심사를 거쳐 캐나다군 소득보조급여가 제공되고, 피부양아동에 대해서 대학등록금에 해당하는 학자금이 지원된다.

사망제대군인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와 단체의료보험이 제공되며, 유가족 가운데 일차적인 간병인은 제대군인 자립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사망제대군인의 배우자는 직업재활을 중심으로 하는 재활서비스와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유가족의 자립생활을 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례관리와 가족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필요에 따라서 장례비용을 지원받으며, 사망제대군인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사망제대군인의 유가족은 군인연금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는다. 유족급여에는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수당과 피부양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녀수당이 있다. 또한 모든 캐나다군인이 부가적으로 가입하는 보충사망급여플랜에 의해 사망군인의 최종연봉의 두 배에 해당하는 보충사망급여를 지급받는다. 보훈제도에서 주어지는 25만 달러의 사망급여와 함께 상당한 액수의 보충사망급여를 지

급받음으로써 유가족은 목돈을 가지고 자립생활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급여들은 보훈급여들의 수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제공된다.

사망제대군인의 유가족은 캐나다 국민연금으로부터 2,500달러 한도의 사망급여와 퇴직연금의 일정한 비율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군인연금의 유족급여가 5년 이상의 복무를 조건으로 제공되는 데 반해서 캐나다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3년 이상의 기여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미만의 복무기간 중에 사망한 제대군인의 유가족은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제대군인의 유가족은 군인연금의 유족급여와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으며, 장애연금과는 달리 이 두 급여의 급여액은 조정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망제대군인의 배우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사회보장 제도의 노령보장연금(OAS)을 수급할 수 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소득보충급여(GIS)를 지급받는다.

3) 비상이 제대군인

캐나다 보훈제도는 비상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보상금이나 지원금, 혹은 의료서비스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억류급여나 화학전 실험참가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비상이 제대군인들은 상이제대군인에게 제공되는 지원제도들 가운데 매우 한정적인 것만을 누릴 수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서 구직지원제도는 상이제대군인이거나 비상이제대군인 모두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비상이 제대군인의 경우 공공서비스 분야의 직업선택 우선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음에, 비상이 제대군인은 의료서비스 가운데

서 군복무 관련 스트레스 상해(OSI)의 치료를 위해 OSI 클리닉과 OSI 사회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비상이 상태로 제대하였지만 복무 중 입은 상해가 제대 후 악화되었을 경우 비상이 제대군인은 단체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상이 제대군인은 제대군인부가 제공하는 VAC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제대군인과 그 가족이 생활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를 입지 않은 군인이 제대 이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국방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다. 이 가운데 캐나다 군인 지속교육 프로그램(CF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CFCEP)은 몇몇 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현역군인이 2년제 전문대학이나 정규대학에서 가능한 한 주로 통신강좌를 통해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인-민간인 훈련 자격인정 프로그램(Military Civilian Training Accreditation Program: MCTAP)은 현역군인이 제대하여 민간영역으로 들어가 기 전에 자신이 군대에서 받은 훈련과 습득한 기술 및 경험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도록 하여 주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형태의 자격증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제2의 경력 지원 네트워크(Second Career Assistance Network: SCAN)는 제대 후 민간영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직업 상담이나 경력개발 관련 세미나를 제공하고 구직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비상이 제대군인에게 있어서는 보훈제도보다는 군인연금으로부터의 급여가 훨씬 더 중요하다. 20년 이상 복무했을 경우 비상이 제대군인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제대군인은 퇴직수당을 지급받는다. 캐나다군인은 군인소득보장보험(SISIP)에 부가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복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를 입었거나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할 때 장기 장애 단체보험플랜을 통해 퇴직 전 소득의 75%의 소득보상금을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받는다.

단, 소득보상금은 군인연금의 급여액을 공제한 액수만큼 지급된다.

비상이 제대군인은 군인연금의 퇴직연금과 캐나다 국민연금의 퇴직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 국민연금의 퇴직연금급여액만큼 군인연금의 퇴직연금급여액이 삭감된다. 그리고 비상이 제대군인은 65세 이상이 되면 사회보장제도의 노령보장연금(OAS)을 수급할 수 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소득보충급여(GIS)를 지급받을 수 있다.

<표 10> 제대사유별 각종 급여수준

구 분		상이제대군인	사망제대군인	비상이제대군인
보 훈 급 여	재활프로그램	○	○	
	소득상실급여	○	○	
	영구장애수당	○		
	보충퇴직급여	○	○	
	캐나다 군인 소득보조급여	○	○	
	상이보상금	○		
	사망급여		○	
	피복수당	○		
	역류급여/화학전 실험참가자 보상금	○	○	○
	의료급여	○	○	
	제대군인 자립프로그램	○	○	
	요양시설입소	○		
	단체의료보험	○	○	△
	군복무 관련 스트레스 상해	○	○	○
	구직지원프로그램	○	○	○
	경력이전 지원 프로그램	○		
	현역군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		
	연방 공공서비스 상이군인 우선고용 프로그램	○		
	상이군인 고용평등 프로그램	○		
	캐나다 군인 지속교육 프로그램			○
군인-민간인 훈련자격인정 프로그램			○	
제2의 경력 지원 네트워크			○	
사례관리 및 상담서비스	○	○	○	
자녀 대학교육 지원		○		
장례비용 보조	○	○		
국립묘지 안장	○	○	○	
군 인 연 금	퇴직수당	○	○	○
	퇴직연금(장애연금)	○		○
	유족급여		○	
	상해보험플랜의 장애보상금	○		
	사망보충급여		○	
군인소득보장보험의 소득보상금	△		○	
국 민 연 금	퇴직연금			△
	장애연금	△		
	유족급여/사망급여		○	
	노령보장연금	○	○	○

	소득보충급여	○	○	○
--	--------	---	---	---

V. 이의신청과 보훈기념사업

1. 등록과 이의신청

1) 등록

복무와 관련하여 입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제대군인은 가능한 한 빨리 상이연금이나 상이보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상이연금을 신청한 날이 바로 상이연금수급권의 발생 시점이 되기 때문이다. 제대군인부의 홈페이지에 상이연금지원서가 게재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제대군인부 사무소나 제대군인 단체들에도 지원서가 마련되어 있다. 신청자는 이 지원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에 있는 제대군인부 사무소나 제대군인 단체들 혹은 국방부-제대군인부 센터(DND/VAC Centre)에 제출해야 한다. 상이연금이나 상이보상금의 신청은 제대군인부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지원서에 필요한 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군번, 복무기간, 상이연금 혹은 상이보상금을 신청하는 신체부위에 대한 진단서, 의사의 소견서(필요한 경우), 장애의 요인이 무엇이고 그 장애가 군복무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신청자의 의견서 등이다. 신청자는 제대군인부의 연금담당직원(VAC Pension Officer)이나 제대군인 단체들의 서비스지원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신청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신청자가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대군인부에서 기록을 확인하여 대신 기입한다.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대군인부의 연금판정관(pension adjudicator)이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를 검토하고, 연금수급권의 진위 여부를 결정한 다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자신이 신청한 상이연금의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은 제대군인부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만일 상이연금의 수급권이 인정된다면 신청자는 자신이 신청한 장애부위의 상이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상이연금(현재는 재활프로그램과 상이보상금)은 대부분의 다른 보훈급여들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상이연금의 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의료서비스 등의 다른 보훈급여들을 신청할 수 있다. 상이연금의 수급자들은 그러한 보훈급여들의 수급자격을 갖지만, 그것들은 상이연금과 함께 자동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지급된다.

2) 상이등급 심사

(1) 상이등급표(Table of Disabilities)

신청자의 상이등급은 상이등급표에 따라 결정된다. 상이등급표는 장애로 인해 발생한 의학적인 신체손상의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2006년 4월에 11년 만에 최신판이 발표되었다.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학적 손상(신체의 일부 혹은 신체 전체의 손실이나 이상으로 인한 기능상실)의 정도와 삶의 질 등급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상이등급표에 나와 있는 의학적 손상등급표(Medical Impairment Tables)에 나와 있는 신체 각 부위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신청 부위의 의학적 손상 등급을 정한다. 다음에, 「삶의

「삶의 질 등급표」(Quality of Life Tables)의 지수들을 참고하여 신체적 손상으로 인해 신청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사회에 활동에 참여할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를 주도하고 참여할 능력의 세 가지 영역에서 어느 정도나 장애를 받는가를 검토하여 삶의 질 등급을 판정한다.

삶의 질 등급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청자가 장애를 입기 전에 자주 했던 일상적인 활동들이 장애로 인해 어느 정도나 힘들어졌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이어서, 의학적 손상의 정도와 삶의 질 등급의 정도를 합산하여 ‘%’로 표현되는 상이등급을 내리게 된다. 예를 들어서, 만성 비강염과 청력상실의 두 가지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의 상이등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1단계	만성 비강염의 의학적 손상등급 판정 = 5
2단계	의학적 손상등급 5%인 만성 비강염의 삶의 질 등급 판정 = 1
3단계	만성 비강염의 상이등급 결정(의학적 손상등급과 삶의 질 등급을 합산) = 6
4단계	청력상실의 의학적 손상등급 판정 = 20
5단계	의학적 손상등급 20인 청력상실의 삶의 질 등급 판정 = 2
6단계	청력상실의 상이등급 결정 = 22
7단계	만성 비강염과 청력상실 환자의 통산 상이등급 = 6 + 22 = 28%

(2) 삶의 질 등급

삶의 질은 의학적 손상등급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다만, 동일 등급의 의학적 손상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생활상의 어려움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생활상의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삶의 질 등급표」에는 삶의 질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나뉘어 있다. <표 11>에 제시되어 있는 삶의 질의

단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삶의 질 1단계의 기준은 장애로 인해서 독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활동 및 대인관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데 약간의 (mild) 어려움이 있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사 일을 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근로를 할 수 있으나 직업 활동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없으며, 운전을 할 수는 있으나 운전하기 위해서 차량을 개조해야 하고, 지역 활동이나 대인관계의 범위와 빈도 및 질적 수준이 의학적 손상으로 인해 약간 줄어드는 경우 등이다.

다음에, 삶의 질 2단계의 기준은 장애로 인해서 독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활동 및 대인관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도의 (moderate) 어려움이 있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도움을 얻어서만 가사 일을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직업에 풀타임으로 종사할 수 없으며, 운전을 할 수 없고, 도움을 받아서만 대중교통이나 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 활동이나 대인관계의 범위와 빈도 및 질적 수준이 상당히 줄어드는 경우 등이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3단계의 기준은 장애로 인해서 독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활동 및 대인관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데 극도의(extreme) 어려움이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도 가사 일을 할 수 없고, 전혀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고, 특수 제작된 장애인차량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 활동이나 대인관계의 범위와 빈도 및 질적 수준이 극도로 줄어드는 경우 등이다.

<표 11> 삶의 질 등급표

의학적 손상등급	삶의 질 1단계	삶의 질 2단계	삶의 질 3단계
----------	----------	----------	----------

1-10	1	2	n.a.
11-20	2	3	5
21-30	3	5	7
31-40	4	6	9
41-50	5	7	11
51-60	6	9	13
61-70	7	11	15
71-80	8	13	17
81-100	10	15	20

<표 11>에서 보듯이 삶의 질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삶의 질 등급은 삶의 질의 각 단계와 9단계로 분류된 의학적 손상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달리 말하면, 동일한 의학적 손상등급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장애부위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겪는 어려움의 정도가 다르며, 이에 따라서 삶의 질 등급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삶의 질 등급은 1에서 20까지이며, 이론적으로는 의학적 손상등급의 최대치 100과 삶의 질 등급 최대치 20을 합하면 상이등급이 120%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이등급은 100%가 한도로 되어있다.

<표 11>에 기초하여 삶의 질 등급을 판정하면, 예를 들어서 의학적 손상등급이 25인 신청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 정도의(삶의 질 2단계)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사람의 삶의 질 등급은 5가 된다. 의학적 손상등급과 삶의 질 등급을 합치면 30%가 되며, 이것이 그 사람의 상이등급이 된다.

(3) 연금급여율과 급여액

의학적 손상등급과 삶의 질 등급을 판정하여 신청자의 상이등급이 결정된 다음에는 연금급여율을 계산한다. 연금급여율은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 군복무가 어느 정도나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판정에 기초한 연금수급권에 상이등급을 곱하여 산출된다. 우선, 수급권 4/5인 중증 우울증 환자의 연금급여율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출된다.

1단계	중증 우울증의 의학적 손상등급 판정 = 15
2단계	의학적 손상 등급 15%인 중증 우울증의 삶의 질 등급 판정 = 2
3단계	상이등급 결정 = 2 + 15 = 17
4단계	연금급여율: $4/5 \times 17 = 14\%$

다음에, 완전수급권이 적용되는 허리 하부 통증과 2/5의 수급권이 적용되는 요추 디스크라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장애를 동시에 지닌 환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아서 연금급여율이 산출된다.

1단계	허리 하부 통증과 요추 디스크의 합산 의학적 손상등급 판정 = 13
2단계	의학적 손상 등급 13%인 허리 장애의 삶의 질 등급 판정 = 2
3단계	의학적 손상 등급과 삶의 질 등급의 합산 = 15
4단계	두 가지 장애 가운데서 수급권이 높은 부위를 결정 = 5/5
5단계	연금급여율 계산: $5/5 \times 15 = 15\%$

4장 9절의 <표 9>에서 보듯이 연금급여율 5%의 기본급여액은 108.57달러, 배우자급여는 27.14달러, 첫째자녀급여는 14.11달러, 둘째자녀급여는 10.32달러 등이다. 연금급여율 15%의 연금급여액

은 이상의 수치들에 3을 곱하면 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연금 급여율 15%의 기본급여액은 325.71달러, 배우자급여는 81.42달러, 첫째자녀급여는 42.33달러, 둘째자녀급여는 30.96달러 등이다. 따라서 4인 가족이라면 월 480달러(41만원) 정도의 상이연금을 지급 받는다.

3) 이의신청

(1) 이의신청 담당기관

1919년에 상이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보훈급여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정부는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들을 설치해왔다. 우선, 1923년에 연방소청위원회(Federal Appeal Board)가 만들어졌고, 1930년에는 상이연금소청재판소(Pension Appeal Court)가 설치되었으며, 1933년에는 상이연금의 운영을 관장하는 캐나다 상이연금위원회(Canadian Pension Commission)에 소청을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되었다. 1971년에는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캐나다 상이연금위원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상이연금 재심위원회(Pension Review Board)가 만들어졌다.

1987년에는 상이연금 재심위원회와 참전제대군인 수당위원회(War Veterans' Allowance Board)가 통합되어 제대군인 소청위원회(Veterans Appeal Board Act)가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라 상이연금과 참전제대군인수당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게 되었다. 1995년의 상이연금 법안 개정에 따라 제대군인 소청위원회와 캐나다 상이연금위원회가 통합되어 제대군인 재심 및 소청위원회(Veterans Review and Appeal Board: 앞으로 VRAB

로 표기)가 만들어졌다. VRAB는 상이연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두 단계의 이의신청과정을 허용하고, 참전제대군인수당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VRAB는 독립적인 준사법적인 심판소(tribunal)이다. VRAB는 의회의 감독을 받으며, 제대군인부의 결정을 고치거나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VRAB의 기본방침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판결을 내리고, 신청자들이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급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VRAB에는 현재 약 1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 이의신청 과정

상이등급이나 연금급여수준에 대해 이의가 있고 그 이의를 지지할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는 신청자는 제대군인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원래 제시했던 것 이외의 새로운 증거자료가 없는 신청자는 VRAB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제대군인부의 연금옹호부(Bureau of Pensions Advocates)는 이의신청자에 대해 무료로 조언을 제공한다. 연금옹호부의 사무실은 캐나다 전역에 퍼져있으며 이의신청자를 대신할 책임을 지닌 법률가들이 근무한다. Royal Canadian Legion과 같은 제대군인 단체들도 무료로 이의신청을 도와준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후 그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되며, 이의신청자는 직접 청문회에 출석하거나 화상대화를 통해 증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 진행된다.

① VRAB 재심청문회

VRAB는 제기된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해 재심심사단(review panel)이 주관하는 소규모의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때 신청자는

영금옹호부나 제대군인 단체들, 혹은 변호사를 통해 대리되거나 스스로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청문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구두증언을 할 수 있으며, 여비는 VRAB에서 부담한다. 이러한 소규모의 청문회는 캐나다의 35개 이상의 지역 중 하나에서 열릴 수 있다. 심의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 때로는 비디오화상회의나 전화회의의 방식이 채택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재심심사단은 두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특별한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한명의 위원이 재심을 담당하기도 한다. 재심심사단 위원들의 다수결에 따른 결정이 VRAB의 결정이 되며, 다수결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유리한 판정이 VRAB의 결정으로 된다. 재심심사단의 위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사실상·법률상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결정된 재심판결에 대해 다시 심사할 수 있다. 이의신청자는 재심심사단의 결정사유를 문서로 전달받으며, 재심심사단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통보 받는다.

② VRAB 소청청문회

재심심사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자는 VRAB에 대해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단(appeal panel)은 VRAB 본부의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청문회를 통해 결정을 내린다. 재심심사단의 위원은 소청심사단에 참여할 수 없고, 이의신청자를 대신하는 법적 대리인이 청문회에 참석한다. 재심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소청청문회도 비디오화상회의나 전화회의의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신청자는 소청청문회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소청청문회에서는 재심청문회와는 달리 신청자에 의한 구두증언은 허용되지 않으며, 문서로 된 증거물만을 채택한다. 소청심사

단의 다수의견이 VRAB의 결정이 되며, 이것은 최종적인 것이다. 소청심사단은 자신들의 결정에 사실상·법률상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혹은 이의신청자가 증거에 어떤 오류가 있다고 증언했을 때, 혹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을 때, 결정된 소청판결에 대해 다시 심사할 수 있다. 이의신청자는 소청심사단의 결정사유를 문서로 전달받는다.

③ 연방법원

VRAB의 재심심사단과 소청심사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자는 마지막으로 연방법원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드는 비용은 모두 이의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연방법원은 VRAB의 결정을 반복할 수는 없고, 사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VRAB에게 청문회를 다시 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연방법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VRAB는 자신의 최종결정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훈급여의 판정과 관련하여 신청자는 VRAB에서의 두 단계와 연방법원까지 모두 세 단계의 이의신청 과정을 밟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최종적인 결정은 VRAB에서 내려지는 것이다.

(3) 이의신청 현황

2004년 4월에서 2005년 3월까지의 1년 동안에 VRAB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람은 모두 6,430명이었다. 이 가운데 캐나다군 제대군인이 67.8%로 다수를 차지했고, 참전제대군인은 22.8%, 기마경찰대는 7.7%였다.

재심청문회에서 이전의 결정의 번복하도록 하는데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요소는 신청자의 증언과 이전 단계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물이었다. 2004-2005년의 6,884명의 이의신청자 가운데

서 평균적으로 볼 때 재심결정 대상자(4,911명)의 56.6%와 소청결정 대상자(1,756명)의 28.8%에 대해 이전의 결정이 번복되었다. 접수된 이의신청 가운데 약 90%는 한 달 이내에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VRAB의 판결에 불복하는 신청자는 연방법원에 사법적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방법원이 VRAB의 판결을 번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04-2005년의 경우 단 25명만이 사법적인 검토를 의뢰하였다. 연방법원의 판결을 받은 17개의 이의신청 가운데 7개의 건수에 대해 VRAB의 재청문회가 허용되었다.

2. 보훈기념사업

제대군인부의 보훈사업은 주로 상이제대군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맞추어져 있다. 그 외의 보훈사업으로는 캐나다 기념 프로그램(Canada Remembers Program)에 속하는 각종 보훈기념사업들이 있다. 이러한 기념사업들은 국가에 대한 제대군인의 희생을 추모하고 널리 알리고, 캐나다군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의식을 고양하며, 캐나다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보훈기념사업들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행사들(예를 들어서, 캐나다 현충일과 보훈관련 국내외 행사 등)과 연간 혹은 몇 년 동안의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행사들이 있다. 보훈기념사업은 제대군인부의 공보국(Public Affairs Branch)에서 담당한다. 이 부서에는 2005년 현재 약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5,400만 달러였다.

1) 제대군인의 해(Year of the Veteran)

2004년 11월에 제대군인부 장관이 2005년을 ‘제대군인의 해’로 선포하였고, 2005년 1월 18일에는 노바 스코샤주의 핼리팩스에서 ‘제대군인의 해’의 시작을 알렸다. ‘제대군인의 해’와 관련하여 제대군인부가 시행한 행사들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3월에는 캐나다의 스카우트 연맹과 함께 ‘기념초대 행사’(Invitation to Remember) 를 개최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약 150,000명의 제대군인들에게 그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는 감사의 기장을 달아주었다. 또한, 노르망디 상륙작전 60주년 기념식과 벨기에 해방 60주년 기념식 등의 국제기념행사들을 개최하였는데, 이 행사들에는 121개의 제대군인 단체들 및 대표자들이 참석하였고 준주를 포함한 13개 지역을 대표하여 26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60주년 기념식은 각 주와 준주별로도 개최되도록 지원하여 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제대군인부는 노르망디와 이태리 전쟁에 참여했던 제대군인이 자신의 참전지역을 방문할 경우 일인당 1,000달러의 여행비용을 보조해주었고, 모두 440여 명이 제대군인부의 지원을 받았다.

2) 보훈교육 및 교육매체의 보급

제대군인부는 어린 학생들에게 제대군인과 캐나다군의 희생과 업적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학습 및 교육매체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04년에 제대군인부는 약 21,000개의 보훈 학습 멀티미디어 팩키지를 각급 학교에 보급하였다. 또한 제대군인부는 세계평화의 유지를 위한 캐나다군의 활약을 그린 책들을

출판하고 있다. 2005년에는 ‘캐나다-벨기에’, ‘캐나다-네덜란드’, ‘홍콩의 캐나다’, ‘기념의 날’ 등의 일곱 권의 책이 출판되었고, 앞으로 열 권의 책들이 2006년도 중에 출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팜플렛 형태의 자료들도 출간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제대군인부는 2005년부터 학생들의 보훈교육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다(<http://www.vac-acc.gc.ca/youth/>). 이 사이트에는 제대군인부가 주최하는 학생대상의 보훈행사들 및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 있고, 보훈관련 학습 매체들과 동영상들이 올려져 있다. 또한, 이 사이트에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한 각종 행태의 보훈교육 참고자료들이 있으며, 교사와 학생들이 보훈관련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코너와 프로젝트 결과물들이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학생들의 보훈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대군인부가 시행한 행사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기억의 횃불’(Torch of Remembrance) 행사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어린 학생들이 캐나다군과 제대군인의 희생과 사회적 공헌을 깨닫도록 유도하였다. 둘째, 제대군인부는 학생들이 노르망디 등 캐나다가 참전했던 유적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제대군인부의 ‘어린이 대사’(Youth Ambassador)로서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보훈의식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셋째, ‘우리학생 프랑스 안내 프로그램(Our Student Guide Program in France)은 캐나다 학생들이 4개월 동안 프랑스에 있는 캐나다군 참전비들의 안내원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2005년에 약 40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넷째, 각종 청소년 대상 사회단체들(예를 들어, 보이스카우트)과 연계하여 나라사랑 캠페인과 희생자추모 뱃지 달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제대군인협회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들 및 대학들과 연계하여 학생대상의 다양한 보훈 행사들 및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바 있다.

3) 기념물의 관리와 보존

제대군인부는 Last Post Fund(참전제대군인과 캐나다군의 장례와 매장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와의 협조 하에 제대군인의 장례와 매장을 지원한다. 2005년에는 약 2,500여 장례식 및 매장식이 인가되었다. 외국의 캐나다군 묘지와 기념물은 영연방 묘지위원회 캐나다 지부(Canadian Agency of Commonwealth War Graves Commission)를 통해 관리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80개 국가에 약 112,000기의 캐나다군 묘소가 있으며, 국내에는 15,000개의 묘지에 약 350,000기의 제대군인 묘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에 있는 캐나다군 관련 기념물을 관리하기 위해 제대군인부는 ‘캐나다 전쟁지역 기념물 보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1차 세계대전 시 캐나다가 작전에 참가했던 프랑스와 벨기에의 격전지를 고치고 복원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5년간 모두 3,000만 달러가 투입되며, 이를 통해서 비미(Vimy) 전투 기념비로 대변되는 각종 기념비들과 전쟁유적지들이 보존 내지는 복원될 것이다. 비미 전투 기념비 복원작업은 2004년 12월에 시작하여 2006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비미 전투지와 보몽-아멜(Beaumont-Hamel) 전투지의 유적 보존공사도 2006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캐나다의 현충원(Memorial)은 국내외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국내에는 수도권 오타와에 국립현충원(National War Memorial)을 비롯하여 Commonwealth Air Forces Ottawa Memorial, East and West Memorial Building, Memorial Chamber, Nursing Sisters Memorial, Ottawa Cremation Memorial 등 여섯 곳이 있고, 지방에는 Halifax Memorial(노바스코샤주), New Foundland National Memorial(뉴 펀들랜드주),

Victoria Memorial(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세 곳이 있다.

해외에는 1·2차 세계대전 동안 캐나다군의 희생이 컸던 프랑스에 Canadian National Vimy Memorial 등 10곳이 있고, 영국에 Brookwood Memorial 등 4곳, 벨기에에 St. Julien Memorial 등 5곳, 이탈리아에 Cassino Memorial 등 2곳, 그리고 네덜란드에 Groesbeek Memorial이 있다. 유럽지역에 22곳의 현충원이 있는 것이다. 그 외에 아시아 지역에는 한국의 Commonwealth Memorial과 홍콩의 Sai Wan Bay Memorial 및 Singapore Memorial이 있고, 에집트에는 El Alamein Memorial이 있다.

4) 제대군인 기념 웹사이트 운영

제대군인부는 캐나다군에 복무 중 사망한 제대군인의 업적을 기념하고 알리기 위해서 가상전쟁기념관(Virtual War Memorial)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116,000 여명의 캐나다군인들의 묘소와 기념물(사진, 편지, 엽서, 개인비망록 등)에 대한 정보가 올려져있다. 2004년 4월에서 2005년 3월의 1년 동안 216,000 여 명이 이 사이트를 방문했고, 이 기간 동안 제대군인부는 1,200 명의 제대군인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입력했으며, 3019건의 업데이트를 하였다.

웹사이트에서 운영되는 또 다른 보훈관련 프로그램은 전쟁영웅 기념프로젝트(Heroes Remember Project: HRP)이다. 2004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세기 동안 캐나다가 참전했던 각종 국제분쟁들에서 활약한 800여 공훈자들에 대한 기록들을 담고 있다. 인터넷 접속자는 그들의 이름이나 핵심단어를 쳐서 원하는 사람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고, 특정한 전쟁이나 분쟁들, 혹은 캐나다군의 각 산하부대와 직위 및 직함들에 대한 비디오 파일들을 볼 수

도 있다.

참고문헌

- CF(Canadian Forces) Pension Services. 2006. *Pension Booklet*.
- CIHI(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06. *Health Care in Canada*.
-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DND). 2005. *Your Pension Plan and Release Pay Benefits*.
- . 2004. *Annual Report-Canadian Forces Superannuation Act*.
 - . 1998. *Annual Report-Canadian Forces Superannuation Act*.
- 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 2005a. *Canadian Pension Plan-Retirement Pension*.
- . 2005b. *Canadian Pension Plan-Disability Benefits*.
 - . 2004a. *Canadian Pension Plan-Survivor Benefits: Death Benefits, Survivor's Pension, Children's Benefits*.
 - . 2004b. *Annual Report of the Canadian Pension Plan, 2002-2003*.
-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Canada(VAC). 2006a. *The New Veterans Charter: Services and Benefits*.
- . 2006b. *The New Veterans Charter: Support for CF Families*.
 - . 2006c. *VAC Disability Pension Benefits for Canadian Forces Clients*.
 - . 2006d. *New Table of Disabilities*.
 - . 2005a. *2005-2006 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
 - . 2005b. *A Guide to Access VAC Health Benefits and the Veterans Independence Program*.
 - . 2005c. *2004-2005 Performance Report*.
 - . 2004a. *Performance Report*.

- . 2004b. *Five Year Strategic Plan: Update 2004.*
- . 2004c. *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
- . 2004d.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004–2006.*
- . 2003a. *Performance Report.*
- . 2003b. *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
- . 2002a. *Performance Report.*
- . 2002b. *Human Resources Five Year Strategic Plan 2002–2007.*
- . 2002c. *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
- . 2001a. *Five Year Strategic Plan.*
- . 2001b. *Performance Report.*
- . 2000. *Performance Report.*

DND–VAC Centre. 2005. *Death and Disability: A Guide to Death and Disability Programs and Services for Serving and Former Canadian Forces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1. *Canada's Retirement Income System.*

Marchildon, Gregory P. 2005. *Health System Profile: Canada.* European Observatory of Health Systems and Policies, WHO.

OECD. 2006. *Main Economic Indicators.*

OSFI(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2005. *OSFI Annual Report, 2004~2005.*

VAC–CFAC(Veterans Affairs Canada–Canadian Forces Advisory Council). 2004. *The Origins and Evolution of Veterans Benefits in Canada 1914–2004.*